第306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國會事務處

2012年2月27日(月) 午後 5時

議事日程

- 1. 국회의장(박희태) 사임의 건
-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명숙) 선출안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
-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
- 16.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
- 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 3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 56. 어촌 · 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안
- 5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6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65. 식물신품종 보호법안
- 6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2.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7.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8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대안)
- 10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
- 10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9.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
- 110.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 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 111.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 112. 대한민국 정부와 마샬군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113.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114.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115.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 116.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 11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 118.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О	국무위원(특임 고흥길) 인사
1.	국회의장(박희태) 사임의 건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명숙) 선출안(의장 제의)(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0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0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11
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11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11
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11
7.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11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천 의원 대표발의)(박상천·안규백·이진삼·김학송·문학진·
	김옥이·송영선·신학용·김장수·서종표·원유철·정미경·심대평·정세균 의원 발의) 12
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박상천 의원 대표발의)(박상천·안규백·이진삼·김학송·문학진·
	김옥이·송영선·신학용·서종표·원유철·정미경·심대평·정세균 의원 발의)12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이용섭・최종원・김재윤・장병완・이석
	현·강창일·김영진·강기정·송민순·박은수·양승조 의원 발의) ·························13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5
12.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3
1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13
3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4
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14
3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심재철·김용태·권택기·정태
	- · 정두언 · 한기호 · 장광근 · 이용섭 · 신건 · 김동철 · 이사철 · 임영호 · 이진복 · 현기환 의원 발의) $-$ 14
3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4
3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14
3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14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15
3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
	박주선·조영택·최영희·전혜숙·박기춘·문학진·김상희·김진애·박은수·홍재형 의원 발의) ······· IC
3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주선·
	조영택·최영희·전혜숙·박기춘·문학진·김상희·김진애·박은수·홍재형 의원 발의) ······· 15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17
15.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 · 최경희 · 이윤성 · 김태원 · 박보환 ·
	김소남 • 유정현 • 허천 • 임동규 • 김호연 • 이한성 • 신상진 • 정양석 • 황영철 • 유정복 • 최연희 •
	이낙연・박기춘・원혜영・이춘석・김영진・안규백・전혜숙・김세연・정갑윤 의원 발의) 17
16.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조 의원 대표발의)(김충조·최인기·홍재형·김유정·강기정·
	김영진 · 손범규 · 안규백 · 전현희 · 김우남 · 신학용 · 김영록 의원 발의)
1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
10	전병헌·이찬열·남경필·권영길·안홍준·홍사덕·김용구·김상희·원혜영·정미경 의원 발의) ······ 17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유정현·김소남·최경희·정수
10	성·백성운·김성조·손범규·신지호·송광호 의원 발의)
19.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1

110.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2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줄)17
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세층) 17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세층) 17 2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진위원장 제출) 17 2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2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28. 어린이늘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28. 어린이늘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39.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면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제일・양승조・안면석・조정식・원해영・강기정・신나균・김준진・김진애・최종원・유성업 의원 발의) 21 4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정두인・이종획・원회목・김세연・박보환・조전희・조진례・권영진・임해규 의원 발의) 17 4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연자기 이원 대표발의)(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제균 12) 42. 학교안전사교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면재일 의원 대표말의)(학원 2) 4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4. 학교목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5. 유어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7. 함보조점 2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9. 학교육업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0. 학교육업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1. 학교목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계정법률안(대안)(의교통상통원위원장 제출) 21 42. 학교보건병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3.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110.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발세방건원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23 111.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21 112.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113.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114.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115.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116. 국제적 아동탈위의 민사적 측면에 판한 협약 가입동의안 부근는 박은수 박작수 병생장 공기정 관정숙속 긴급해 긴장함 건상화 긴상화 긴유정・긴장을 안 박수는 박은수 박작선 백원수 백제현 난재일・중단은 신산화 건강의 전사보공조조약 비준동의안 23 116. 국제적 아동탈위의 민사적 측면에 판한 협약 가입동의안 박수는 박은수 박작수 생원상 관리 관계정 관계적 안원 생원 등의 상대회 관계정 관계정 의원 발의) 21 21 관계정 수원 학원 전해수 강원 건강의 관계정 가입동의안 박각의 관계정 인정의 전계정 가장기정 관정숙수 긴원의 전해수 상원의 건강의 관계정 인원 발의) 21 21 전체적 상탈위의 전체적 상원을 인안 전체적 의원발의 기원 관계정 인원일의 인관적 산례형 전체적 의원일의 인원일의 인관적 신원일의 신원일의 인관적 신원일의 인관적 신원일의 신원일의 인관적 신원일의 인원일의 인원일의 인원일의 인관적 신원일의 인원일의 인원일의 인원일의 인원일의 인원일의 인원일의 인원일의 인	2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17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 2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 2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27.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18 39.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부 제출) 21 39.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부 제출) 21 4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대자원 · 양승조 · 안민석 · 조정식 · 원해영 · 장기정 · 신낙균 · 김춘진 · 김진에 · 최종원 · 유성엽 의원 발의) 21 4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 · 정두언 · 이종혁 · 원회목 · 김세연 · 박보환 · 조전력 · 조진래 · 권영진 · 임해구 의원 발의) 21 4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김재균 · 강항일 · 김정룡 · 강기정 · 김동철 · 박상돈 · 양송조 · 최철국 · 노영민 · 이춘석 · 이시종 · 조정식 · 김성균 · 김기현 · 조배숙 의원 발의) 21 4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전) 의원 대표발의)(민재일 · 양승조 · 유성엽 · 안민석 · 박보환 · 서상기 · 김세연 · 김유정 · 조정식 · 김성교 의원 발의) 21 4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 · 권영진 · 서상기 · 정두언 · 김세연 · 김옥이 · 김대환 · 조전역 · 이진복 · 고홍길 의원 말의) 21 44. 학교폭격에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6. 출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7. 학교복건 양가경업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8. 학교복건 양가경업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9.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재복송 중단 축구 결외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21 40.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병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과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23 110.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병된 대한민국 정부와 수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미준도의학 작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111.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23 112.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113.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114.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115.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116.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12등의안 24억숙 · 김관형 · 건상형 · 건유정 · 건의항 · 건의정 · 건의당의안 · 건경숙 · 건관형 · 건수당 · 각은수 · 박존선 · 박존선 · 박건수 · 박건수 · 박건수 · 신부전 · 건상경 · 건용정 · 건대용 · 관회상 · 박건수 · 건수전 · 학원수 · 건수경 · 관점을 · 건설을 · 인본식 · 인생은 · 인생은 · 인생은 · 인부은 · 박건수 · 박건수 · 박건수 · 박건수 · 박건수 · 학원수 · 건상점	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17
25.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진위원장 제출) 17 2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세출) 17 27.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유성법 폐지법률안(정부 세출) 18 28. 이런이늘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세출) 18 39.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원일 의원 대표발의)(번재일 · 양송조 · 안민석 · 조정식 · 원해영 · 강기정 · 신탁균 · 김춘진 · 김진에 · 최충원 · 유성업 의원 발의) 12 4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 · 정두인 · 이종혁 · 원회목 · 김재연 · 박보환 · 조전혁 · 조진래 · 권영진 · 입해규 의원 발의) 17 4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송용 의원 대표발의)(주송용 · 김재균 · 강청일 · 김영료 · 강기정 · 김동철 · 박상돈 · 양송조 · 최철국 · 노양민 · 이춘석 · 이시종 · 조정식 · 김성교 · 김기현 · 조배숙 의원 발의) 18 42. 학교안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제일 의원 대표발의)(번재일 · 양송조 · 유성업 · 안민석 · 박보환 · 서상기 · 김세연 · 김유정 · 조정식 · 김성교 의원 발의) 19 4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 · 권영진 · 서상기 · 정두인 · 김세연 · 김옥이 · 김대환 · 조전혁 · 이건복 · 고홍길 의원 발의) 19 44. 학교폭력에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11 4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11 46. 조·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7. 참고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8. 중학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길의안(대안)(의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21 49.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길의안(대안)(의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21 40. 감천기관 정부와 마산군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411.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23 412.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413.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414.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415.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416. 국제의 아동탈취의 민사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23 41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걸의안(최영화 · 강기정 · 곽정숙 · 김관형 · 건상형 · 건상등의 · 건기정 · 곽정숙 · 건선형 · 건상형 · 건생형 · 건상형	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17
2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27.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18 28. 이런이늘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39.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번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 · 양승조 · 안민석 · 조정식 · 원혜영 · 강기정 · 신낙균 · 김춘진 · 김진애 · 최종원 · 유성업 의원 발의) 21 4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 · 정두언 · 이종혁 · 원회목 · 김세연 · 박보환 · 조전혁 · 조진래 · 건영진 · 임해규 의원 발의) 22 41. 폐교재산의 활용측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김재균 · 강창일 · 김영록 · 강기정 · 김동철 · 박상돈 · 양승조 · 최철국 · 노영민 · 이춘석 · 이시종 · 조정식 · 김성교 · 김기현 · 조배숙 의원 발의) 21 4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번제일 · 양송조 · 유성업 · 안민석 · 박보환 · 서상기 · 김세연 · 김유정 · 조정식 · 김성교 · 김기현 · 조배숙 의원 발의) 21 4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 · 권양진 · 서상기 · 정두언 · 김세연 · 김우이 · 김대환 · 조전혁 · 이건복 · 고홍길 의원 발의) 21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6.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7. 전체정공조협약 및 대책이서 서병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23 110.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병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23 111.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23 112. 대한민국 정부와 마산군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23 113.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114.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23 115.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23 116. 학원막 정부와 빨리에시아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23 11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최영희 · 강기정 · 곽정숙 · 김급대 · 김동철 · 김상희 · 김유정 · 김재윤 · 문희상 · 박우순 · 박은수 · 박주선 · 백원우 · 백재현 · 변재일 · 송민순 · 신낙군 · 양승조 · 원혜영 · 이낙연 · 이미경 · 이성남 · 이애주 · 이천열 · 이출식 · 전현희 · 전혜숙 · 정법구 · 조정심 · 주승용 · 후미에 · 최재성 의원 발의) · 23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17
27. 한국지방자치단제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18 28. 이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39.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양승조・안민석・조정식・원혜영・강기정・신낙균・김춘진・김진애・최종원・유성업 의원 발의) 21 4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정두인・이종혁・원희목・김세연・박보환・조진혁・조진래・권영진・임해규 의원 발의) 21 4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재균・강청일・김영록・강기정・김동철・박상돈・양승조・최철국・노영민・이준석・이시종・조정식・김정군・김기현・조배숙 의원 발의) 21 4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양승조・유성엽・안민석・박보환・서상기・김세연・김유정・조정식・김성곤 의원 발의) 21 4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권영진・서상기・정두언・김세연・감옥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7. 기원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의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21 48. 학교폭력에 사례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23 111.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23 112.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113.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114.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23 11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최영희・강기정·곽정숙・김급래・김동철・김상희・김유정・김재윤・문희상・박우순・박은수・박주선・백원우・백제현・변재일・송민순・신낙관・양승조・원혜영・이낙연・이비정・이성남・이애주・이찬열・이윤석・전현회・전혜숙・정법구・조정식・주승용・추미애・최재성 의원 발의) 22	2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17
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39.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양승조・안민석・조정식・원혜영・강기정・신낙균・김춘진・김진애・최종원・유성엽 의원 발의) 21 4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정두인・이종혁・원희목・김세연・박보환・조건혁・조진래・권영진・임해규 의원 발의) 21 41. 페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재균・강항일・김영록・강기정・김동철・박상돈・양승조・최철국・노영민・이춘석・이시중・조정식・김성관・김기현・조배숙 의원 발의) 21 4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제일 의원 대표발의)(변제일・양승조・유성엽・안민석・박보환・서상기・김세연・김유정・조정식・김성관 의원 발의) 21 4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권영진・서상기・정두언・김세연・감옥정・조정역・김성관 의원 발의) 21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7. 항원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23 111.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23 112. 대한민국 정부와 파산라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113. 대한민국 정부와 파산라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114. 대한민국 정부와 파산마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115. 대한민국 정부와 파산마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116.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업동의안 23 11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회 수립 촉구 결의안(최영회・장기정・곽정숙・김금래・김동철・김상회・김유정・김재윤・문희상・박우순・박은수・박주선・백원우・백재현・변재일・송민순・신낙관・양승조・원혜영・이낙연・이미경・이성남・이애주・이찬열・이윤석・전현회・진혜숙・정범구・조정식・주승용・추미애・최재성 의원 발의) 22	2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7
39.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양승조·안민석·조정식·원해영·강기정·신낙균·김춘진·김진애·최종원·유성엽 의원 발의) 21 4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정두언·이중혁·원희목·김세연·박보환·조전혁·조진래·권영진·임해규 의원 발의) 21 4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재균·강창일·김영록·강기정·김동철·박상돈·양승조·최철국·노영민·이춘석·이시종·조정식·김성곤·김기현·조배숙 의원 발의) 21 4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양승조·유성엽·안민석·박보환·서상기·김세연·김유정·조정식·김성곤 의원 발의) 21 4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권영진·시상기·정두언·김세연·김유정·유성엽·안민석·박보환·의원 대표발의)(박보환·권영진·시상기·정두언·김세연·김유정·등전역·김성론 의원 발의) 21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7. 유생이공장국업학 및 개정병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21 49.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21 40. 급사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4위으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과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23 49.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40. 대한민국 정부와 학의인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411. 대한민국 정부와 학리이시아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412. 대한민국 정부와 발레이시아 정부 간의 초등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23 413. 대한민국 정부와 발레이시아 정부 간의 청두에 관한 점부자 의원 발의 24 42 학원 수단 전원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최영희·강기정·곽정숙·진현희·전해숙·징범주·집생회·김유정·김재윤·문희상·박우순·박은수·박주선·백원우·백재현·변재일·송민순·신낙균·양승조·원혜영·이낙연·이미경·이성남·이애주·이찬열·미준석·전현희·전혜숙·정범구·조정식·주승용·추미애·최재성 의원 발의) 22	27.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18
장기정・신낙균・김춘진・김천대・최종원・유성엽 의원 발의)	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8
4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ㆍ정두인ㆍ이종혁ㆍ원회목ㆍ김세연ㆍ박보환ㆍ조전혁ㆍ조진래ㆍ권영진ㆍ임해규 의원 발의)	39.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양승조·안민석·조정식·원혜영·
박보환·조전력·조진래·권영진·임해규 의원 발의)		강기정·신낙균·김춘진·김진애·최종원·유성엽 의원 발의) ·························21
4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김재균ㆍ강창일ㆍ김영록ㆍ강기정ㆍ김동철ㆍ박상돈ㆍ양승조ㆍ회철국ㆍ노영민ㆍ이춘석ㆍ이시종ㆍ조정식ㆍ김성곤ㆍ김기현ㆍ조배숙 의원 발의)	4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ㆍ정두언ㆍ이종혁ㆍ원희목ㆍ김세연ㆍ
강창일・김영록・강기정・김동철・박상돈・양승조・최철국・노영민・이춘석・이시종・조정식・김성곤・김기현・조배숙 의원 발의)		박보환·조전혁·조진래·권영진·임해규 의원 발의)21
김성곤·김기현·조배숙 의원 발의)	4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김재균ㆍ
4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양승조·유성엽·안민석·박보환·서상기·김세연·김유정·조정식·김성콘 의원 발의)		강창일 • 김영록 • 강기정 • 김동철 • 박상돈 • 양승조 • 최철국 • 노영민 • 이춘석 • 이시종 • 조정식 •
양승조·유성엽·안민석·박보환·서상기·김세연·김유정·조정식·김성곤 의원 발의)		김성곤·김기현·조배숙 의원 발의)21
4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권영진·서상기·정두언·김세연·김옥이·김태환·조전혁·이진복·고홍길 의원 발의) 21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109.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23 110.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23 111.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23 112. 대한민국 정부와 마샬군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113. 대한민국 정부와 국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114.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23 115.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23 116.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23 11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최영회·강기정·곽정숙·김금래·김동철·김상회·김유정·김재윤·문희상·박우순·박은수·박주선·백원우·백재현·변재일·송민순·신낙균·양승조·원혜영·이낙연·이미경·이성남·이애주·이찬열·이춘석·전현희·전혜숙·정범구·조정식·주승용·추미애·최재성 의원 발의) 23	4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
김옥이・김태환・조전혁・이진복・고흥길 의원 발의)		양승조·유성엽·안민석·박보환·서상기·김세연·김유정·조정식·김성곤 의원 발의) ······· 21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4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ㆍ권영진ㆍ서상기ㆍ정두언ㆍ김세연ㆍ
4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김옥이·김태환·조전혁·이진복·고흥길 의원 발의) ·······21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1
109.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4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21
110.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21
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109.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23
111.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110.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
112. 대한민국 정부와 마샬군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23 113.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23 114.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23
113.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23 114.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111.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23
114.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112.	대한민국 정부와 마샬군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23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113.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23
115.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114.	
116.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11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최영희·강기정· 곽정숙·김금래·김동철·김상희·김유정·김재윤·문희상·박우순·박은수·박주선·백원우· 백재현·변재일·송민순·신낙균·양승조·원혜영·이낙연·이미경·이성남·이애주·이찬열· 이춘석·전현희·전혜숙·정범구·조정식·주승용·추미애·최재성 의원 발의)	115.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23
곽정숙·김금래·김동철·김상희·김유정·김재윤·문희상·박우순·박은수·박주선·백원우· 백재현·변재일·송민순·신낙균·양승조·원혜영·이낙연·이미경·이성남·이애주·이찬열· 이춘석·전현희·전혜숙·정범구·조정식·주승용·추미애·최재성 의원 발의)23	116.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23
백재현·변재일·송민순·신낙균·양승조·원혜영·이낙연·이미경·이성남·이애주·이찬열· 이춘석·전현희·전혜숙·정범구·조정식·주승용·추미애·최재성 의원 발의)23	11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최영희·강기정·
이춘석·전현희·전혜숙·정범구·조정식·주승용·추미애·최재성 의원 발의) ·······23		곽정숙 · 김금래 · 김동철 · 김상희 · 김유정 · 김재윤 · 문희상 · 박우순 · 박은수 · 박주선 · 백원우 ·
		백재현 • 변재일 • 송민순 • 신낙균 • 양승조 • 원혜영 • 이낙연 • 이미경 • 이성남 • 이애주 • 이찬열 •
118.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여성가족위원장 제출)26		이춘석·전현희·전혜숙·정범구·조정식·주승용·추미애·최재성 의원 발의)23
	118.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여성가족위원장 제출)26

(17시52분 개의)

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 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1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 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국무위원(특임 고흥길) 인사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흥길 특임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임장관 고흥길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 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고흥길 특임장관입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정부'라고 하지만 저 자신은 '1년씩이나 남은 정부'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1년 동안 지난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열심히 견마지로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의장(박희태) 사임의 건

(17시54분)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 장(박희태)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임 사유를 담은 유인물을 여러분들의 좌석에 배부하 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임사유서는 끝에 실음)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서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2항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세연 의원, 배은희 의원, 홍영표 의원, 곽정 숙 의원, 이상 네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한공식**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 하셔서 좌측 명패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 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가'를,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권하는 분은 '기권'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우 측 투표함 상단에 출력되는 투표 결과지를 확인 하신 후 투표용지의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 는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광판에 표시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7시56분 투표개시)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기다릴까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18시11분 투표종료)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7표 중 가 157표, 부 17표, 기권 23표입니다.

의장의 임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국회의 수장 께서 사퇴를 해야 되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정당정치가 한걸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 면서 국회의장(박희태)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명숙) 선출안**(의장 제의)

(18시13분)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의사일정 제2항 국가인 권위원회 위원(장명숙)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선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장향숙 위원이 지난 1월 13일자로 사직함에 따라서 새로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직후보자 장명숙의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오늘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였으며 의석에 있는 단 말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서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들께서는 다시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8시14분 투표개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의장직무대리, 홍재형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홍재형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8시31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68표, 부 16표, 기권 4 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명숙) 선출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병행해서 본회의가 진 행되는 관계로 오늘 의사일정 순서와 관계없이 의안 준비가 완료된 안건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 위원장 제출)
- **10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 위원장 제출)
- **10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8시32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10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4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5항 정당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주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장대리 주성영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주성영 의원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SNS·문 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선거 당일에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 습니다.

둘째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선상부재자투표제 도를 도입하였고,

셋째, 2013년도 재보궐선거부터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였고,

넷째,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 선 방안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중대 국외 선거범 에 대하여 여권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제도를 도입하였고,

다섯째, 여론조사제도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실 시기관의 자료보관의무를 확대하는 등 여론조사 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여섯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 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3대 1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선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 선거 구를 분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를 신설하 여 총 3개의 지역선거구를 증설하였고, 전남 담 양군곡성군구례군 선거구를 분할하여 담양군은 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와 곡성군은 순천시 선거구와, 구례군은 광양시 선거구와 각각 통합 하도록 하고, 경남 남해군하동군 선거구는 사천 시 선거구와 통합하도록 하여 2개의 지역선거구 를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인구편차가 3 대 1을 넘지 않도록 경기도 이천시여주군 선거구 중 이천시를 단독 선거구로 하고, 여주군을 양평군가평군 선거구와 통합하도록 구역 변경을 하며,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처인구,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수원시 권선구·팔달구 선거구 등의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구 조정에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246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54인으로 하고, 제19대 국회에 한하여 세종특별 자치시 선거구가 신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하도록 하며,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감안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화 및 준의결기관화하는 입법적 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정당 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첫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둘째 다소 불명확한 정치자금법의일부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3건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 사천지역구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최근 선거구 폐지가 거론되는 영호남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국회에 대한 규탄 소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단순히 인구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하여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의 선거구가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지역 선거구 폐지는 수입개방과 농업회생정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우리 농어촌을 지켜온 지역 주민들에게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장 많은 희생을 겪어온 것이 우리 농어촌입니다.

95년 농산물 수입개방 이래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조차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농가소득은 이미 도시의 76.7%밖에 되지않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농가부채는 호당 평균2721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떠안고 있습니다. 지을수록 빚만 쌓여 가는 농사를 포기하며 많은 이들이 농촌을 떠났고, 남은 이들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로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농어촌의 농사짓는 청년들은 결혼을 할 수 없 어 농어촌을 떠나야 되는 것이 이미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농민 숫자는 $60\sim70$ 년대의 800만에서 300만이 되지 않는 289만 명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10\sim20$ 년 후 우리 농촌은 그나마 유지되던 명맥조차 끊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0년 전체 읍·면의 81.7%가 초고령화로 진입하였다는 결과를 내어 놓았고, 농어촌 고령가구 비율은 도시보다 3배 정도 육박하고 있는 33%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11.6% 정도입니다.

역대 정권들이 도시와 기업 중심의 발전 모델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농촌이 희생되어 농촌인 구가 줄었는데, 도저히 농촌에서는 농가소득으로는 살 수 없어서 인구가 줄었는데 그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역구마저 뺏어 버린다면 농촌의 정치적 소외와 경제적 낙후현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농어촌의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선거 때만되면 농어촌지역의 선거구를 통폐합하고 도시지역 지역구는 늘리는 이러한 기현상을 반복해야되겠습니까?

또한 농어촌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묵살한 채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일 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어떻게 대의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천·남해·하동, 이 면적이 1431㎢입니다. 서울의 배가 넘습니다. 이러한 면적을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지역구로 관리하라는 것은 48명의 서울에 있는 지역구 관리보다도 인구밀도는 물론 드물지만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중

앙정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농어촌 지역구를 희생양으로 삼는 선거구 개편 안을 단호히 반대하며 의원정수를 302석으로 확 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에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을 국민들이 많 이 지탄합니다. 저는 그것이 국회가 싸움질만 하 는데 왜 늘리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왜 싸움질이 일어나겠습니까? 재벌들 곳간 채워 주고 서민들 외면하는,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 까? 참으로 서민을 위하고 어려운 전체 국민을 위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의원 의정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반대 하 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302석으로 늘리고 19대 때는 그야말로 서민과 국민을 외면하는 일방적인 재벌 곳간 채워 주는 그런 국회가 아니라 서민과 전체 국민을 대변하고 위하는 국회로 간다면 의 원정수 늘리는 것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라온 이 안에 반대해 주시고 의원정수 를 302석으로 늘려서 농어촌 지역구의 소외와 양 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료 의 원들의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18대 국회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 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성찰해 보십시오. 국민 들께서는 18대 국회를 '날치기 국회, 폭력 국회, 막말 국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8대 국회가 끝 나가는 지금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텐데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오명인 '밥그릇 국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손으로 밥그릇 국회라는 오명만은 벗겨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선거구 획정안은 아무런 원칙도, 아무런 기준도 없는 나눠먹기이며 현역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고 구태정 치의 전형이라고 국민들께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국민적 비판을 우리가 18대 국회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선거구획정위원회 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정치인을 배제하고 민간 위원으로만 구성했습니 다.

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8개 선거구 를 분구하고 5개 선거구를 통합하는 안을 내놓았 습니다. 이 안은 가장 공명정대하게 헌법적 가치 를 수호하고 평등권을 보장한 안입니다. 그런데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이 이 안을 무시하고 게리 맨더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줄여야 하는 5개 지역 구의 국회의원들이 4명은 새누리당이고 1명은 민 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 원회가 내놓은 8개의 선거구를 분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를 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밥 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난투극까지 벌였다고 비판 할 뿐 아니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고 비아 냥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 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선거구 인구편차 1 대 3 을 지키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25조를 개정하여 용인시 기흥구 일부 동, 천안시 서북구 일부 동 을 타 선거구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이야말로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것이 여야가 말하는 새로운 정치입니까?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거와 단절 하는 모습입니까?

제가 속한 우리 민주당 역시 선거구 획정과 관 련하여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 각합니다.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로운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한명숙 민주당 대표에게 공동으로 제안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이나 진배없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안한 8개 분구, 5개 통합안을 초당적으로 받아 들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 는 것이고 구태정치와 단절하는 것이며 우리 국 회의원이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스스로 게리맨더링을 만들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일을 하지 맙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국민들로부터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선 배·동료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선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先東 議員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의 김선동입니다.

저는 앞서 발언하신 우리 강기갑 의원의 반대 토론을 찬성하면서 그와 달리 새롭게 제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 국회 의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행법 에서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에게 1명의 활동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예비후보자는 제외하고 후보자만으로 한정해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비후보자 역시 후보자와 똑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활동보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개특위에서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은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제라도 의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뜻을 모아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할 경우에 후보자인 경우에는 국가가 그 제작비용을 보전해 주지만 예비후보자가 그것을 제작해서 배포한 경우에 보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똑같이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점자형 공보물을 의무로 하지 않고 임의 또는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습니 다. 이것을 의무로 함으로 해서 우리 시각장애인 들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정당 한 참정권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일반 공보물과 점자형 공보물의 면수를 똑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자형 공보물은 제작하게 되면 길어지게 됩니다. 일반 공보물보다 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면수를 똑같이 제한하다 보니까 점자형 공보물은 그 내용을 매우 줄이게 되고 축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일반인과 똑같이 제공하지 않게 되는결과적인 차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볼 때 그 내용을 충분히 똑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면수 제한을 점자형 공보물에서는 해제하는 것이 옳다 여겨집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께서 혜량하셔서 뜻을 모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다음 104호, 105호 안건 때마다 나와 서 반대토론 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당법에서 이번에 일부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저희들 찬성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금 교사·공무원들에게도 국민으로서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사·공무원의 정당 발기인 혹은 당원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시대와 정치 발전에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을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또 정치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소액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0만 원 소액공제를 전 국민에게 권고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사 · 공무원에게만 10만 원의 세액공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야말로 교사 · 공무원을 정치적 한정치산자로 내모는 격이 된다, 교사·공무원에게만 왜 그렇 게 차별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점에서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에게 권고하고 있는 10만 원 세 액공제를 교사 · 공무원에게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것을 담지 못 한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을 반대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예, 김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92인, 반대 39인, 기권 43 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53인, 반대 11인, 기권 13 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59인, 반대 7인, 기권 12 인으로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 운영위원장 제출)
- 7.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8시55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 일부개 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인사 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국가 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 7항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 나 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이명규**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이명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안 등 4건의 법률안과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 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확대하 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정감사를 정기회 집회 일 이전에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의 대상의 확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이행계획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9일 국회법이 개정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입법예고의 방법 등은 국회의 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 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 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위원회안·대안 및 규칙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국 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기권 2인으로서 국 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7인, 기권 3인으로서 인 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기권 2인으로서 국 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2인, 기권 5인으로서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천 의원 대표 발의)(박상천·안규백·이진삼·김학송· 문학진·김옥이·송영선·신학용·김장수· 서종표·원유철·정미경·심대평·정세균 의원 발의)
- 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박상천 의원 대표 발의)(박상천·안규백·이진삼·김학송· 문학진·김옥이·송영선·신학용·서종표· 원유철·정미경·심대평·정세균 의원 발의) (19시02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8항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안규백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안규백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

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박상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 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의 법률안은 모두 작년 4월 육군훈련소 훈 련병 사망사건 이후 이러한 군 의료사고의 재발 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위원회의 군의료체계개선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군 의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법률로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박상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민간에 비해 보수 및 근무 여건의 격차로 인해 군의료인력의 충원율이 미흡한 현상 을 개선하기 위해서 군의과 및 치의과 장교의 재 임용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심사를 거친 군의관의 경우 연령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병역을 마친 의사가 군의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 을 37세로 확대하는 한편, 군장학생 출신 의무부 사관은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가산복무 하도 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상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 료에 관한 법률안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토대로 군보건의료인을 비롯한 군보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 육성하는 한편, 군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는 등 군인의 보건의료접 근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 련하는 데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안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3인, 기권 1인으로서 군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기권 4인으로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이용섭·최종원·김재윤·장병완· 이석현・강창일・김영진・강기정・송민순・ 박은수 · 양승조 의원 발의)
-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2.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 일부 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 위원장 제출)

(19시06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 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한 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용섭 의원님 나 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이용섭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광주 광산구을 출신 민주 통합당 이용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계속계약 공 사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은 계속비로 편성하도록 법 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속비 원칙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 건, 사업 성격, 사업 기간 및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계속비 계약의 방식과 근거를 법률에 명 시하였고, 입찰참가사전심사제도의 법률상 근거 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제금 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 시 국회 사전의결 원 칙을 명확히 규정하되, 정부의 탄력적 대응 필요 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사용을 예 외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은행총재 임명 시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였고, 둘째 우리나라화폐단위의 법률적 근거를 한국은행법에 두기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이용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6인, 기권 3인으로서 국 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 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4인, 기권 2인으로서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4인, 반대 4인, 기권 3인 으로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7인, 기권 3인으로서 한 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 3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심재철·김용태· 권택기·정태근·정두언·한기호·장광근· 이용섭·신건·김동철·이사철·임영호· 이진복·현기환 의원 발의)
- 3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 3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조정식 · 박주선 · 조영택 · 최영희 · 전혜숙 · 박기춘 · 문학진 · 김상희 · 김진애 · 박은수 · 홍재형 의원 발의)
- 38.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 박주선 · 조영택 · 최영희 · 전혜숙 · 박기춘 · 문학진 · 김상희 · 김진애 · 박은수 · 홍재형 의원 발의)

(19시15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30항 특정 금융거 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금 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 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의사일정 제34항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5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 일정 제36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7항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성헌 의원님 나오셔 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이성헌**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이성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특정 금융거 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 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동 법률안은 이종구 의원이 대표발의하 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 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감독·검사자가 감독·검사에 필요한 특정금융거 래정보를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 록 하였고 둘째, 국세청 조세범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홍준표 의원, 박병석 의원, 이주영 의원, 김영환 의원, 이성남 의원, 배영식 의원 및 이진복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신용카드업자가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였고 둘째,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우대하도 록 하는 한편 셋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하 는 상품에 대한 광고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넷째,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을 제한하기 위하여 레버리 지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준주택에도 주택금 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 용으로 지원하는 주택금융의 범위를 신용보증으 로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 니다.

다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 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 안한 것으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법인부실채권 등 의 정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인수체계 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배영식 의원 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 관계를 맺은 신기 술사업자의 주식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증연계투자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법률 안은 김동철 의원과 배영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였고 둘째, 예금보험공사의 위험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다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법률 안은 김동철 의원, 권택기 의원, 이사철 의원, 고 승덕 의원, 김용태 의원, 박선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였고 둘째, 조사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정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수임 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현행법의 법문표현 중 남자와 여자를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부합하도록 남성과 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이성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6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0인, 기권 3인으로서 여 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2인, 기권 1인 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 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4인, 기권 3인으로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1인, 기권 5인으로서 금 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5인, 기권 5인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47인, 기권 6인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5.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최경희·이윤성·김태원· 박보환·김소남·유정현·허천·임동규· 김호연·이한성·신상진·정양석·황영철· 유정복·최연희·이낙연·박기춘·원혜영· 이춘석·김영진·안규백·전혜숙·김세연· 정갑윤 의원 발의)
- 16.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조 의원 대표발의)(김충조·최인기·홍재형·김유정· 강기정·김영진·손범규·안규백·전현희· 김우남·신학용·김영록 의원 발의)
- 1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전병헌·이찬열·남경필· 권영길·안홍준·홍사덕·김용구·김상희· 원혜영·정미경 의원 발의)
-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유정현·김소남·최경희· 정수성·백성운·김성조·손범규·신지호· 송광호 의원 발의)
- **19**.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안전위원장 제출)
- 2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안전위원장 제출)
- 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안전위원장 제출)
-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 위원장 제출)
- 2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 법률안(정부 제출)

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9시30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세특례제 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 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 의사일정 제16항 인 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지방 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 일정 제21항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 일정 제22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24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119구조 · 구급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 부개정법률안,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1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 이인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특례제 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임대주택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에 따라 면제 또는 50%까지 경감하고, 산림조합공동사업 법인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재향소방동우회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소방 동우회와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충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대리인 신청시 무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 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자구를 정리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아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대 변화에 따라 처벌 필요성이 감소한 범죄는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는 경범죄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하여 기록물 관리의 책임성 및 객관성을 제 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를 별정우체국 직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일 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범운전자연 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모범운전자 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장, 장비 및 보험을 지 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장 은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 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소하천 예정지 지정 효 력 상실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 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제 화재단이 2009년 12월에 해산되었으므로 육성법 을 폐지하고자 하는 동 법률안의 취지는 타당하 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어린이놀 이시설의 관리주체나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를 안전검사지정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이인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6인, 반대 4인, 기권 1인 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서 인 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1인, 기권 1인으로서 지 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지 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인으로서 경 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상 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2인, 기권 3인으로서 국 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지 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홍재형 부의장, 정의화 의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사회교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119구조·구 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59인, 기권 5인으로서 소 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

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2인, 기권 2인으로서 한 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9인, 기권 4인으로서 어 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 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9.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변재일·양승조·안민석·조정식· 원혜영 · 강기정 · 신낙균 · 김춘진 · 김진애 · 최종원 · 유성엽 의원 발의)
- 4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 · 정두언 · 이종혁 · 원희목 · 김세연 · 박보환 · 조전혁 · 조진래 · 권영진 · 임해규 의원 발의)
- 4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김재균 · 강창일 · 김영록 · 강기정 · 김동철 · 박상돈 · 양승조 · 최철국 · 노영민 · 이춘석 · 이시종 · 조정식 · 김성곤 · 김기현 · 조배숙 의원 발의)
- 4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변재일·양승조·유성엽·안민석·박보환· 서상기 · 김세연 · 김유정 · 조정식 · 김성곤 의원 발의)
- 4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권영진·서상기·정두언· 김세연 · 김옥이 · 김태환 · 조전혁 · 이진복 ·

고흥길 의원 발의)

-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 4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 학기술위원장 제출)
-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 과학기술위원장 제출)

(19시47분)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의사일정 제39항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폐교재산의 활 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학교보건법 일 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 정 제45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사일정 제46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박보환 의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장대리 박보환 존경하는 정 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법 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문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그레고리력 등 법률상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 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원장에 대한 임기 제 및 공모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법 문장을 간 결하게 정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교재산 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 교된 학교의 기부자가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소득 증대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무상사용 요건이 완화되도록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용 등을 학교안전

공제회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부터 학생 정신건강 상 태 조사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필요시 학부모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경태 의원, 권영진 의원, 이재오 의원, 안민석 의원, 전병헌 의원, 배은희 의원, 원유철 의원, 변재일 의원, 최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고, 피해 학생의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시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비용을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여 피해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에 요청, 14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여 가해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국무 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시도에 학 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시·군·구에는 학교폭 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도록 하였고, 시도 교육감 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희목 의원, 안민석 의원, 윤상일 의원, 권영진 의원, 서상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무상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으로 확대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교육감만이 실시하도록 하고, 저 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도 전공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박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50인으로서 천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6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진수희 의원님?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3인, 기권 4인으로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3인, 기권 2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4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인, 기권 3인 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1인, 기권 5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09.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 110.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 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 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 111.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 112. 대한민국 정부와 마샬군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113.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 동의안
- 114.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 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115.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 116.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 11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최영희·강기정·곽정숙·김금래·김동철·
 - 김상희 · 김유정 · 김재윤 · 문희상 · 박우순 · 박은수 · 박주선 · 백원우 · 백재현 · 변재일 ·
 - 송민순·신낙균·양승조·원혜영·이낙연·
 - 이미경 · 이성남 · 이애주 · 이찬열 · 이춘석 ·
 - 전현희 · 전혜숙 · 정범구 · 조정식 · 주승용 ·
 - 추미애·최재성 의원 발의)

(19시58분)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 항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 의안(대안), 의사일정 제110항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 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 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 111항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동의 안, 의사일정 제112항 대한민국 정부와 마샬군도 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13항 대한민국 정 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 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14항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15항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16항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의사일정 제117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구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장대리 구상찬** 짧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구상찬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비준동의안과 2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은 본 의원과 김동철 의원, 박선영 의원 등이 발의한 3건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관련 결의안들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 대안은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강제로 북송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6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세수 확보를 위해, 둘째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조세 정보교환과 탈세 방지를 위해, 셋째 대한민국 정부와 마샬군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 정부와 국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 정부와 국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역외소득 탈세 방지를 위해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또 넷째,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 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파나마에 진출한 개인과 기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섯째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은 보다 안정적인 형사사법 공조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위해, 여섯째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은 국제적 아동탈취 문제 발생 시 우리나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은 성폭력의 종식과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결의안(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구상찬 의원님 최선을 다 했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 단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4인, 기권 2인으로서 중 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 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1인, 기권 1인으로서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조 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마샬군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 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4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마샬군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원 의원님, 천천히 하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3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5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 조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50인으로서 국제적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9인, 기권 2인으로서 유 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 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8.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여성가족위원장 제출)

(20시09분)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의사일정 제118항이 마 지막인 것 같습니다.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는 관례에 따라서 단말기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의 유무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시정 및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서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 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1분 산회)

【사임사유서】

존경하는 의원님께, 저는 2008년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모 의원에게 금300만 원의 경선자 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 수 장으로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장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된 공소장을 참고해 주시고 잘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7일 박희태

공소사실: 피고인 박희태는 2008. 7. 3.경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전 당대회에서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후보로 출 마하여 대표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 인 김효재는 상황실장이라는 직책으로 박희태 후 보의 선거캠프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조정만은 박희태 후보 선거캠프에서 재정을 담당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 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 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8.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4층에 있는 박희태후보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피고인 박희태는 2008. 6. 27. 하나은행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는 등 경선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조정만은함은미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오도록 한 다음 현금 300만원을 담은 돈봉투를 준비하고, 피고인 김효재는 위와 같이 만들어진 돈봉투를 선거캠프 직원을 통하여 국회 의원회관 835호 사무실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고승덕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박희태로 하여 금 한나라당의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92인)

강 성 천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승 규 강 창 일 구 상 찬 권 성 동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성 곤 김 성 수 김 성 회 김 영 우 김 을 동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충 환 김 태 환 김 혜 성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우 순 박 종 근 박지 원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손 범 규 선 경 식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건 신 상 진 신지호 안 규 백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 선 호 유 승 민 이 명 규 윤 상 일 이 강 래 이 경 재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윤 석 이 정 선 이 진 삼 이 춘 석 이 화 수 장 유 석 정 동 영 정 수 성 정 진 섭 정 몽 준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원 진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최병국 한 기 호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39인) 강 기 갑 곽 정 숙 권 택 기 권경석 김 낙 성 金先東 김성식 김세연 김 영 진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학 용 박 은 수 박 준 선 서 종 표 송 광 호 신 성 범 안 경률 안 상 수 이 낙 연 양 승 조 우 제 창 유성엽 이 범 래 이 재 오 이종혁 장 병 완 정 옥 임 정 장 선 전 재 희 정 병 국 정 태 근 정 해 걸 조승수 최인기 최종원 한 선 교 허 태 열 기권 의원(43인) 강 기 정 강 명 순 고 승 덕 권 영 진 김 기 현 김선 동 김성동 김성 태 김 영 록 김용 태 김 김 춘 진 정 김 학 재 박 병 석 김충조 김 태 원 박 상 은 박 주 선 신 학 용 박 보 환 안 효 대 원 혜 영 유기준 윤 영 이종구 이 철 우 이 진 복 이 찬 열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 규 식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53인)

임 동 규

정양석

조 진 형

추 미 애

임 해 규

정 영 희

주 광 덕

허 워 제

장 광 근

정 하 균

진 성 호

이 한 성

정 범 구

조 전 혁

최 재 성

강 기 정 강 봉 균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구 상 찬 권 경 석 권성동 권 택 기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선 동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성 태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환 김 태 원 김 학 용 김혜성 김 희 철 나성 린 박 기 춘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성윤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건 신 상 진 신 지 호 신 학 용 안 경률 신 성 범 아 규 백 안 상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우 윤 근 우 제 창 원 유 철 오 제 세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상 일 유선호 유 승 민 영 이강래 이경재 이 낙연 윤 이두아 이 명 규 이 범 래 이상득 이 상 민 이성남 이 애 주 이 성 헌 이 유 석 이 재 오 이 종 구 이종혁 이 진 삼 이 철 우 이 진 복 이 찬 열 이 화 수 이 춘 석 이한성 임 해 규 장 병 완 장 광 근 정 동 영 장 윤 석 정범구 정 양 석 정 몽 준 정 수 성 정 태 근 정 영 희 정장선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최경희 최경환 최규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인 기 최재성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1인)

강 기 갑 곽 정 숙 金先東 김용구 정 옥 임 김 정 서종표 심 대 평 조 승 수 한 선 교 허 태 열 기권 의원(13인)

강 명 순 권 영 진 박 은 수 김 춘 진 선경식 송광호 임동규 이정선 전 재 희 정병국 주 광 덕 조 진 형 진 성 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59인)

강 길 부 강 기 정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구 상 찬 고 승 덕 권경석 권 성 동 권 택 기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진 표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지 원 배 은 희 백 재 현 배 영 식 백 성 운 변 재 일 서 상 기 선경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성 범 신 건 신 상 진 신지호 안 규 백 신 학 용 안 상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승 민 윤 상 일 유 옂 이강래 이 낙 연 이경재 이두아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윤 석 이 재 오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혜 훈 이 화 수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재 희 정 동 영 정 몽 준 정 수 성 정 양 석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주 광 덕 주성 영 주 승 용 주호영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한 선 교 허 태 열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진 하 황 영 철 반대 의원(7인) 강 기 갑 곽 정 숙 김 선 동 金先東 서종표 심대평 정 옥 임 기권 의원(12인) 강명순 권 영 진 김 정 김 태 환 박 은 수 임 동 규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영 희 조 전 혁 조 진 형 진 성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창 일 고 승 덕 곽 정 숙 구 상 찬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김기현 권 택 기 김 낙 성 김동성 김 무 성 김 동 철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金先東 김성식 김성 태 성 회 김세연 김 김 영 록 김 영 우 영 진 김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김 재 윤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환 김 충 환 김 충 조 김 태 원 김혜성 김 학 용 나성린 노 영 민 문 희 상 박 우 순 문 학 진 박 보 환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지 원 배 영 식 백성운 배 은 희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종 표 서 상 기 선 경 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건 신 상 진 신지호 신 성 범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률 안 상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혜영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성엽 윤 상 일 이강래 유 승 민 윤 영 이두아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상 득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이용 섭 이 윤 석 이 재 오 이 종 구 이 진 복 이정선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혜훈 임동규 이 화 수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재 희 정 동 영 정 몽 준 미경 정범구 정 정 수 성 정양석 영 희 정 옥 임 정 정 태 근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수 희 최경환 최경희 진 옂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태 열 홍 영 표 홍 일 표 황 영 철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정 장 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6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곽 정 구 상 찬 권 경 고 승 덕 숙 석 권 성 동 영 권 택 기 김기 현 궈 짉 김 낙 성 동 김 무 김 성 김 동 철 성 김 상 희 김선 동 김 성 곤 金先東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 성 태 김 성 세 김 영 록 김 영 우 회 김 연 김 영 진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김 균 김 재 유 김 정 김 정 후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충조 김 충 환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혜 성 나성 린 문 희 상 박 보 환 노 영 민 박 우 순 박 주 선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배 은 희 박 지 원 배 영 식 백 성 운 백 재 혅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선 경 식 성 윤 손 범 환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영 선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지호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우 제 창 원 유 철 세 원 희 룡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승 민 이강래 윤 상 일 유 영 이 낙연 이 두 아 이미경 이 범 래 이상득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윤 이 재 오 이정 석 선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진삼 이 찬 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0] 성 이화수 동 장 광 근 장 병 임 규 완 장 윤 석 재 희 정 동 영 정 몽 준 전 미경 범 정 수 성 정양석 정 정 구 정 영 희 옥 임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조 경 정 정 하 균 정 해 걸 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진 수 희 진 영 최경 환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 인 기 재 한 선 교 최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허 태 열 허 원 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원혜영 최규식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7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곽 정 숙 상 찬 권 경 석 구 권 영 진 택기 김 기 현 권 성 동 권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김선 동 김 성 곤 金 先 東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영 록 영 우 김 김 김 유 정 김 영 김용구 김 용태 진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충 조 김 충 환 김 김 태 환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혜 성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나성 린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워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서 상 기 선 경 윤 환 서 종 표 식 성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학 용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안 경 심 대 평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양 승 조 우 제 창 안 효 대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윤 상 일 윤 이강래 이두아 영 낙 연 0]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헌 이상득 이 성 남 0] 애 주 이 성 이 용 섭 이 윤 석 재 이 오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춘 이 한 성 0] 석 이혜훈 이 화 수 동 규 장 광 근 임 장 병 장 윤 석 완 전 재 회 정 동 영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수 성 옥 임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전 혁 주 승 용 조 진 형 주 광 조 진 래 덕 주호영 최경환 진 수 희 진 영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최 병 국 추 미 애 최 재 성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태 열 홍 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변재일 조승수 최인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69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창 일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 곤 金先東 김성동 김성수 김성 태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용 태 김 유 정 김용구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학 용 김혜성 나성 린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혅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선 경 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 용 건 심대평 안 경률 안 규 백 안 상 수 우 제 창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정복 윤 상 일 이강래 이 낙 연 영 윤 이두아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상득 이성남 이성 허 이애주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재 오 이 주 영 이정선 이 종 구 이 진 복 이진삼 이 차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윤 석 정 동 영 정 몽 준 정미경 정양석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장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주호영 진 수 희 진 영 최 경 환 최경희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기권 의원(2인)

신지호 이혜훈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투표 의원(167인)찬성 의원(162인)

강 기 갑 강 명 순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곽 정 숙 고 승 덕 구 상 찬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김기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동성 김 상 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 곤 성 동 김성수 김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성식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용 태 김 을 동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표 김충조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환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혜 성 나성린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우 순 박 주 선 박 보 환 박 종 근 박 지 워 박 준 선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서 상 기 서 종 표 선경식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상 진 신 건 신 성 범 신 지 호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우 제 창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워 혜 영 워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정복 윤 상 일 영 이강래 이 두 아 이 명 규 유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상 득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윤 석 이 재 오 이정선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진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 혜 훈 이 화 수 장 광 근 임동규 장 병 왂 장 유 석 정 동 영 전 재 희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 규 식 최병국 최인기 최 재 성 추 미 애 한 선 교 허 태 열 한 기 호 허 원 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5인) 김용구 박 은 수 이 낙 연 이 용 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3인)

정 영 희

강 기 갑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성천 강 승 규 곽 정 숙 고 승 덕 구 상 찬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선 동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유 정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혜성 김 효 석 나성 린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은 수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성 운 배 영 식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선경식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상 진 신 건 신지호 신 학 용 신 성 범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유기준 원 희 룡 원 희 목 유성엽 유 승 민 윤 상 일 윤 영 이 낙연 이두아 이 명 규 이 범 래 이상득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이용섭 이 윤 석 이정선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삼 이 차 열 이 진 복 이한성 이 철 우 이 춘 석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유 석 전 재 희 정 몽 준 정미경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장 선 정진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호 영 최경환 진 영 최경희 추 미 애 최병국 최규성 최 인 기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영 철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홍 준 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60인)

강 봉 균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성천 강 승 규 곽 정 숙 고 승 덕 구 상 찬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선 동 金先東 김 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 성 태 김성회 김 영 록 김세연 김 영 우 김 영 진 김용 태 김 을 동 김용구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효 석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워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재 쳙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선경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신 상 진 신 성 범 건 신지호 신 학용 안 경 률 심 대 평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혜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성 엽 유정복 윤 상 일 윤 유 승 민 옂 이두아 이 낙연 이명규 이 범 래 이 애 주 이상득 이성남 이성헌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 재 오 이 주 영 이정선 이 종 구 이진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혜 훈 이 한 성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재 희 정 동 영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규 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태 열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4인)							
권 경 석	김 무 성	김 정 훈	김 충 환				

주 광 덕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인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영 표 홍 재 형 홍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박 지 원 김성 곤 이 종 구

조 승 수

조 원 진

조 배 숙

조 경 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9인) 찬성 의원(156인)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6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명순 강 봉 균 강성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기 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동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용구 김 용 태 김 유 정 김 재 윤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혜성 김 효 석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종 근 박 준 선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종 표 서 상 기 손숙미 선 경 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송광호 송 민 순 신 건 신 상 진 신지호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 선 호 유기준 유정복 유 성 엽 윤 상 일 유 영 이 경 재 이 낙 연 이두아 이 명 규 이 범 래 이상득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정 이 유 석 이인기 이 재 오 선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혜훈 임 동 규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재 희 정 동 영 정 몽 준 정미경 정범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장 선 찬성 의원(15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승 규 곽 정 숙 구 상 찬 고 승 덕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동 김성 곤 김 성 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정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효 석 나 성 린 문 희 상 박 우 순 노 영 민 박 보 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은 수 박 준 선 박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선 경 식 송 광 호 송 민 순 신 상 진 신 건 신지호 신 학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워 혜 영 워 희 목 워 희 룡 유 기 준 유선호 유 성 엽 유 정 복 윤 상 일 유 영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 범 래 이 상 득 이성헌 이 애 주 이 성 남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혜훈 임동규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재 희 정미경 정 동 영 정 몽 준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장 선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승 수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전 혁 주 광 덕 진성호 조 진 형 진 수 회 영 최경환 최경희 짓 최 규 식 최병국 추 미 애 최 규 성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정양석 강성천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54인)

강 기 갑 강 봉 균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성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곽 정 숙 구 상 찬 권 영 진 권경석 권 성 동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선 동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 영 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충 환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 태 화 김혜성 김 학 용 김 효 석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선경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신 상 진 신 성 범 신지호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워 유 철 워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성엽 유정복 윤 상 일 유 영 이경재 이두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상 득 이성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윤 석 이인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한 성 이혜훈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재 희 장 윤 석 정 동 영 정 몽 준 정미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장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해 걸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승 수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진성호 진 수 희 옂 진 최경희 최 규 식 최경환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인 기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홍 영 표 허 원 제 홍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4인)

박 주 선 송 민 순 신 검 신 학 용 기권 의원(3인) 이 성 남 이 춘 석 정 범 구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57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기 갑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곽 정 숙 구 상 찬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동 철 김 상 희 김 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 성 식 김성 태 김성회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재 경 김 을 동 김 재 유 김 정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정 훈 김 진 표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효 석 나 성 린 문 희 상 박 우 순 노 영 민 박 보 환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지 워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선 경 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신 건 신 상 진 신 지 호 신 학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워 혜 영 원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정복 유 상 일 이경재 이두아 유 영 이 낙연 이 명 규 이 범 래 이상득 이성남 이 애 주 이성헌 이 용 섭 이 유 석 이 인 기 이 재 오 이종구 이정선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 혜 훈

기권 의원(3인)

김재균 신성범 정미경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6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갑 강 명 순 강성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곽 정 숙 권 택 기 구 상 찬 권경석 권성동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용구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용 태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환 김 충 환 김 태 원 김호연 김 학 용 김혜성 김효 석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준 선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선 경 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숙미 송광호 송 민 순 신 건 신 학 용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지 호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선호 유 성 엽 유정복 유 상 일 윤 영 이경재 이 낙 연 이두아 이명규 이 성 남 이 범 래 이상득 이성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철우 이 춘 석 이한성 이 찬 열 이 혜 훈 장 광 근 장 병 완 임 동 규 장 유 석 전 재 희 정 동 영 정몽준 정 수 성 정양석 영 희 정장선 정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해 걸 정 하 균 조 배 숙 조 경 태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진 래 주 광 덕 조 전 혁 조 진 형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종워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권영진 정범구

이어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0인)

강 봉 균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곽 정 숙 구 상 찬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 관 김성동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 영 우 김 영 록 김 영 진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유 정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문 희 상 노 영 민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변 재 일 서 상 기 손 범 규 서 종 표 선 경 식 성 윤 환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신 건 신 성 범 신 학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워 혜 영 워 유 철 워 희 룡 워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성엽 윤 상 일 윤 영 이경재 이 낙연 이두아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상 득 이 성 남 이성헌 이애주 이 윤 석 이 용 섭 이 인 기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혜훈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재 희 장 윤 석 정 동 영 정 몽 준 정범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장 선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원 진 조 진 형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 규 식 최병국 최종원 추 미 애 한기호 한 선 교 홍 영 표 허 원 제 홍 준 표 황 영 철 홍 일 표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신 상 진 신지호 유 정 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고 승 덕 곽 정 숙 구 상 찬 강 승 규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혜 성 김호연 문 희 상 김 효 석 나성 린 노 영 민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워 배 영 식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성 윤 환 서 상 기 서종표 선경식 손 숙 미 손 범 규 송 광 호 송민순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지호 신 학 용 안 경률 안 규 백 안 효 대 우 제 창 오 제 세 양 승 조 원 유 철 워 혜 영 유기준 워 희 룡 유선호 유성엽 유정복 윤 상 일 유 영 이경재 이 낙 연 이두아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상 득 이 성 남 이성헌 이애주 이 윤 석 이 인 기 이 용 섭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혜훈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재 희 장 윤 석 정 동 영 정몽준 정 수 성 정양석 정 장 선 정 영 희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배 숙 조 경 태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호 영 최경환 영 최경희 진 성 호 진 최규식 최병국 최 종 원 최규성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원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영 철 황 진 하

반대 의원(2인)

강 기 갑 조 승 수

기권 의원(1인)

정범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 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5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곽 정 숙 구 상 찬 권경석 권 영 진 권성동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동 철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동 김성회 김성 곤 성 식 김 김 영 록 김세연 김 영 우 김 영 진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혜 성 김호연 김 효 석 나성린 노 영 민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준 선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선경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신 검 신 상 진 신 성 범 신지호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워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 선 호 유기준 유성엽 유정복 윤 상 일 윤 영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규

기권 의원(2인)

추 미 애

홍 영 표

황 영 철

정범구 최경희

한 기 호

홍 일 표

황 우 여

(김재윤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55인, 기권 의원 2인임)

한 선 교

홍 재 형

황 진 하

허 원 제

홍 준 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59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곽 정 숙 구 상 찬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영 진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환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용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은 희 박 지 워 배 영 식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선 경 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민 순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지 호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효 대 양 승 조 원 유 철 오 제 세 우제 창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성엽 유정복 윤 상 일 영 윤 이경재 이 낙연 이 두 아 이 명 규 이상득 이 범 래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정선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임 동 규 장 병 완 이혜훈 장 광 근 장 윤 석 전 재 희 정 몽 준 정 동 영 정범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회 정 장 선 정진섭 정태근 정 하 균 조 경 태 정 해 걸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전 혁 조 원 진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회 진 최경환 최경희 영 최 규 성 최병국 최 규 식 최 종 원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강 봉 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천 구 상 찬 강 승 규 고 승 덕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동 김 세 연 김성식 김성회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재 균 김 진 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표 김충조 김 충 환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혜 성 김호연 김 효 석 나성 린 노 영 민 박 은 수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주 선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은 희 배 영 식 백성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선 경 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신 신 상 진 신 지 호 건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률 안 규 백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 정 복 윤 상 일 유성엽 이두아 윤 영 이경재 이 낙 연 이 범 래 이상득 이성남 이성허 이 애 주 이 용 섭 이인기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혜훈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재 희 정 동 영 정몽준 정 범 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장 선 정진섭 정태근 정 해 걸 정 하 균 조경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진성호 진 수 회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한 선 교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영 철 황 진 하 기권 의원(5인) 김 기 현 金先東 이 명 규 조 승 수 주 호 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6인)

강 봉 균 강성 천 강 기 갑 강 명 순 강 승 규 고 승 덕 곽 정 숙 구 상 찬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형 오 김혜 성 김 학 용 김호연 김 효 석 나 성 린 노 영 민 박 우 순 박 은 수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지 원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선경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민 순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지 호 신 학 용 안 경률 안 규 백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성엽 윤 상 일 유 영 이경재 이 낙연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래 이상득 이성헌 이성남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혜 훈 장 광 근 장 병 완 임 동 규 장 윤 석 정 몽 준 정 범 구 정 수 성 전 재 희 정양석 정 영 희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전 혁 조 원 진 주 광 덕 주 호 영 조 진 래 조 진 형 진 수 희 최경환 진 성 호 진 영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강 길 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55인)

강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영 진 권성동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김 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유 정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충 조 김 태 워 김 태 환 김 학 용 형 오 김혜성 김 김호연 김 효 석 나성린 노 영 민 박 보 환 문 희 상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은 희 박 지 워 백성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신 건 신 상 진

신지호 신 학 용 안 경 률 신 성 범 안 규 백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혜 영 원 유 철 원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선호 유정복 이경재 이 낙 연 유 영 이두아 이 명 규 이 범 래 이상득 이 애 주 이성남 이성헌 이 용 섭 이 윤 석 이종구 이 인 기 이정선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혜 훈 이 한 성 장 광 근 임 동 규 장 병 완 정 몽 준 전 재 희 정 동 영 정범구 정양석 정 영 희 정 수 성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워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조 진 래 주 광 덕 주호영 진 수 희 진 성 호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 규 식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5인) 김 진 애 박은수 선 경 식 윤 상 일 장 윤 석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47인)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곽 정 숙 구 상 찬 고 승 덕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김 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회 김 영 록 김세연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정훈 김충조 김충환 김 진 애 김 태 원 김 형 오 김 태 환 김호연 김 효 석 나성 린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선 경 식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신 상 진 신 성 범 신 건 신 학용 안 규 백 신 지 호 안 경 률 우 제 창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워 유 철 워 혜 영 워 희 룡 워 희 목 유선호 유성엽 유 기 준 유 정 복 윤 상 일 윤 석 용 이경재 윤 영 이 낙 연 이두아 이명규 이 범 래 이상득 이성남 이성헌 이용 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정선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춘석 이 찬 열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이혜훈 전 재 희 정 몽 준 장 윤 석 정 동 영 정 범 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회 정 장 선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전 혁 조 원 진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진성호 진 영 최경환 최병국 최경희 최규성 최 규 식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선 교 허원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6인)

강길부 김학용 송광호 이철우 이한성 주호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6인)

강 길 부 강명순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동성 김무성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 영 록 김 영 환 김 세 연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형 오 김 혜 성 나 성 린 김호연 노 영 민 문 희 상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보 환 박 지 원 박 준 선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재 현 백 성 운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선 경 식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건 신 상 진 신 지 호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워 희 룡 워 희 목 원 혜 영 유기준 유일호 유정복 윤 상 일 유 석 용 영 이경재 이 낙 연 유 이두아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상 득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종구 이정선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한성 이 혜 훈 이화수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정동영 정 범 구 정수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장선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전 혁 주 광 덕 조 진 래 조 진 형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최경환 진 영 최경희 최규성 최 규 식 최병국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영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4인) 강 기 갑 곽 정 숙 조 승 수 金先東 기권 의원(1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59인)

유성엽

강 기 갑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곽 정 숙 구 상 찬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용구 김 영 환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충 조 김 충 환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형 오 김혜성 김호연 나성 린 노 영 민 박 보 환 박 우 순 문 희 상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워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선경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상 진 신 건 신 성 범 신지호 신 학용 안 규 백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워 혜 영 워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일 호 유 정 복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이 명 규 이경재 이 낙 연 이두아 이 범 래 이상득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윤 석 이인기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차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 화 수 장 광 근 이 혜 훈 임 동 규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범 구 정 동 영 정 수 성 정양석 정 옥 임 정 영 희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주호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희 최경환 최규성 최 규 식 최병국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영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김 을 동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2인) 찬성 의원(158인)

강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명 순 강성 천 강 승 규 곽 정 숙 고 승 덕 구 상 찬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 동 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김 진 애 김 춘 진 정 김 진 표 김 충 환 김충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형 오 김혜성 김호연 노 영 민 나 성 린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선경식 성윤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건 신 학 용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지 호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아 효 대 양 승 조 우 제 창 원 유 철 오 제 세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 일 호 유성엽 윤 상 일 유정복 윤 석 용 이경재 이 낙 연 윤 영 이두아 이 명 규 이 범 래 이상득 이성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주 영 이인기 이 종 구 이정 선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혜훈 이화수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재 희 장 윤 석 전 여 옥 정동영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태 근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주 호 영 조 진 형 주 광 덕 진 성 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기권 의원(4인) 김선 동 이성남 임동규 정 범 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2인) 찬성 의원(16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곽 정 숙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 세 연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 을 동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충조 김충환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형 오 김혜성 김호연 나성린 노 영 민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재 현 백성운 변 재 일 서 상 기 선 경 식 손 범 규 서 종 표 성 윤 환 손 숙 미 송 광 호 송민순 송 영 선 신 상 진 신지호 신 건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률 안 상 수 안 규 백 아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일 호 유 정 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이경재 이 낙 연 이두아 이 명 규 이 범 래 이상득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인기 이정선 이 주 영 이종구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혜훈 이 화 수 장 광 근 임 동 규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여 옥 정 동 영 정 범 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옥 임 정 영 희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호영 진 수 희 진 성 호 진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영 최 규 성 최 규 식 최병국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한 선 교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기권 의원(1인)

구 상 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4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갑 강 명 순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곽 정 숙 구 상 찬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낙 성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성 곤 김성동 김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호연 나성 린 노 영 민 문 희 상 박 보 화 박 은 수 박 지 원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선경식 성 윤 환 서 종 표 손 범 규 손숙미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성 범 신 건 신 상 진 신지호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원 희 룡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워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일 호 유정복 윤 상 일 윤 석 용 유정현 이 낙 연 유 영 이경재 이두아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상 득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윤 석 이인기 이종구 이 주 영 이정선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혜훈 이 화 수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동 영 정 범 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옥 임 정장선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주 광 덕 주호영 조 진 래 조 진 형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차 명 진 영 최경화 최경희 최규성 최 규 식 최 병 국 추 미 애 한 기 호 최종원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박 우 순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6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성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 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 동 성 김 상 희 김 선 동 金先東 김성 관 김성동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성식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형 오 김 학 용 김혜성 김호연 나성린 노 영 민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선경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건 신 상 진 신 신 지 호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 률 아 규 백 안 상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오 제 세 원 희 룡 워 희 목 유 기 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윤 상 일 유 정 현 유 석 용 영 이경재 이 낙 연 윤 이 두 아 이명규 이 범 래 이상득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인기 이종구 이 윤 석 이정선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한성 이 혜 훈 이화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동 영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장 선 정태근 정진섭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승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성 최 규 식 최병국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진 하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정 범 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7인)

강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곽 정 숙 구 상 찬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진 김 광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 동 성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 곤 金先東 김 성 동 김 성 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환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유 김 정 훈 김 진 애 긲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형 오 김호연 김혜성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선 경 식 성 윤 환 송 광 호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 용 신 지 호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아 효 대 양 승 조 오제세 우 제 창 워 혜 영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영 이경재 이 낙 연 윤 이두아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상 득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윤 석 이인기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혜훈 이 화 수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정동영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옥 임 정 양 석 정 영 희 정장선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진 형 조 전 혁 조 진 래 주 광 덕 주 호 영 진성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경희 진 영 최경환 최 규 성 최 규 식 최병국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재 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권 택 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63인)

장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무성 김 상 희 김동성 김 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영 우 김 영 환 김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춘 진 김충조 김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형 오 나성린 김 호 연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우 순 노 영 민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지 원 배 영 식 배 은 회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선 경 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지 호 신 학 용 안 경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워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 정 현 이 낙 연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이 두 아 이명규 이 범 래 이 상 득 이성헌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정 이종구 선 이 주 영 이진복 이 차 열 이 철 우 이 한 성 이 춘 석 이 혜 이 화 수 훈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윤 석 임동규 전 여 옥 전 재 희 동 영 정 범 구 정 정 수 성 정양석 영 희 정 장 선 정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해 걸 정 하 균 조 배 숙 조 경 태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 규 식 최병국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한 선 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2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성천 고 승 덕 곽 정 숙 구 상 찬 권경석 권성 동 권 영 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무성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 성 곤 성 김성수 김 성 김 동 식 김성조 김성회 김 세 연 김 영 록 영 우 김 영 화 김용구 김용 태 김 김 을 동 재 김 재 균 김 재 윤 김 경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원 김 충 조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호연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선 경 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건 신지호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혜영 원 회 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 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이경재 이두아 이 명 규 이 낙 연 이 범 래 이상득 이성남 이성 허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정 이종 구 선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한성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동 영 정 범 구 정 수 성 정양석 영 희 옥 정 장 선 정 정 임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경 회 최 규 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준 표 황 영 홍 재 형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김 광 림 워 희 룡 한 선 교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63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명 순 강 승 규 곽 정 숙 강성 천 고 승 덕 구 상 찬 권 경 석 성 동 권 영 세 권 권 영 권 택 기 광 김 낙 성 진 김 림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동 김성식 金先東 김성수 김 김성회 세 김 영 록 성 조 김 연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용 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균 김 김 정 훈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충 환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형 오 김혜성 김호연 나성린 문 희 상 노 영 민 박 우 순 박 보 환 반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영 식 박지 원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혅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선 경 식 성 윤 환 손 숙 미 손 범 규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지 호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원 희 목 유성엽 유 일 호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윤 석 용 일 이두아 윤 옂 이경재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범 래 이석현 이 상 득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윤 석 이정선 종 구 이 주 영 0] 이 진 복 이 찬 열 철 우 이 춘 석 이 이 화 수 이 한 성 이 혜 훈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전 여 옥 완 장 윤 석 전 재 희 정 동 영 정 범 구 정 수 성 영 희 정 장 선 정 양 석 정 정 옥 임 정 태 근 하 균 정 진 섭 정 해 걸 정 조 경 태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 병 국 최 경 회 최 규 성 최 규 식 한 기 호 최종원 추 미 애 허 원 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김기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65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곽 정 숙 구 상 찬 권경석 권 영 세 권성동 권 택 기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동성 김무성 김 상 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충 조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학 용 김 태 워 김 태 화 김 형 오 나성 린 김 혜 성 김호연 노 영 민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준 선 백 재 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선 경 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지 호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아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혜 영 원 희 목 워 희 룡 유기준 유성엽 유 일 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이경재 이 낙 연 이두아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상 득 이석현 이 애 주 이성남 이성헌 이용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한성 이 혜 훈 장 광 근 장 병 이화수 임 동 규 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동 영 정 범 구 정 옥 임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장선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워 진 조 진 형 조 전 혁 조 진 래 주 광 덕 차 명 진 주 호 영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영 표 홍일 표 황 우 여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장 윤 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6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영 진 권 성 동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동성 김무성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 성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성 회 김 세 연 김 김 영 우 김 영 록 영 환 김용구 긲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충 조 김 충 환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환 김 태 원 김 학 용 김혜성 나성 린 김호연 노 영 민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박지 원 배 영 식 백 성 운 배 은 희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선경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 용 안 경 률 안 효 대 신 지 호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 일 호 유 정 현 유성엽 유정복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이경재 이 낙 연 이두아 이명규 이 범 래 이 상 득 이석현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이용섭 이 인 기 이 윤 석 이정선 이종구 이 진 복 이 차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 화 수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재 희 전 여 옥 전 혜 숙 정 동 영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광덕 주호영 진성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규성 최 경 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종원 추미애 한 선 교 홍 영 표 황 영 철 허원제 홍 준 표 황 진 하

강 명 순

강 봉 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4인)

강 길 부

찬성 의원(159인)

강 기 갑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종 원

고 승 덕 강성천 강 승 규 곽 정 숙 구 상 찬 권경석 권 영 진 권 성 동 권 택 기 김 광 림 김 낙 성 김 기 현 김무성 김 동 성 김 상 희 김 선 동 金先東 김성동 김성수 김 성 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환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김호연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배 은 희 박 준 선 박지 원 배 영 식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선경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지 호 신 학 용 안 경 률 양 승 조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윤 상 일 윤 석 용 유정복 유정현 윤 이경재 이 낙연 이두아 영 이 명 규 이 범 이상득 이성남 래 이성헌 이 애 주 이용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정선 이 종 구 이 진 복 이 차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혜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범 구 정 수 성 전 혜 숙 정 동 영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추 미 애 한 기 호 홍 영 표 홍 일 표 황 영 철 황 진 하 홍 준 표 기권 의원(5인) 김성 곤 김 진 애 이석현 한 선 교 허원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62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기 갑 강성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곽 정 숙 구 상 찬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무성 김동성 김 상 희 김선동 김성 곤 金先東 성 동 김성수 김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성식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 을 동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충 환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김호연 나성린 노 영 민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민 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건 신지호 신 학용 안 경 률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희 룡 워 혜 영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경재 윤 영 이두아 이명규 이 낙 연 이 범 래 이 상 득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이용섭 이 윤 석 이인기 이정선 이종구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 혜 훈 이 화 수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정 범 구 전 재 희 전 혜 숙 정 동 영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장 선 정의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성 호

기권 의원(2인)

선경식 장윤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3인) 찬성 의원(160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곽 정 숙 구 상 찬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 현 김 낙 성 김동성 김무성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 영 록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재 윤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태 원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화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문 희 상 김호연 나성 린 노 영 민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지 워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선경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성 범 신 지 호 신 건 신 상 진 신 학 용 안 경률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유 석 용 이경재 이 낙 연 윤 영 이두아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상 득 이성남 이성헌 이용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정선 이 종 구 이 진 복 이 차 열 이 철 우 이춘석 이 한 성 장 병 완 이화수 임동규 장 광 근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동 영 정양석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 장 선 정 해 걸 정진섭 정태근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호 영 진성호 진 수 희 진 옂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성 최 규 식 최병국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50인)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구 상 찬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 동 성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수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박 병 석 김호연 나 성 린 문 회 상 박 상 천 박 우 순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선 경 식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지 호 신 학 용 안 경률 안 규 백 양 승 조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워 혜 영 원 희 룡 원 회 목 유 기 준 유 성 엽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경재 이두아 윤 영 이 낙 연 이 범 래 이 상 득 이성남 이성헌 이용 섭 이 인 기 이정선 이종구 이 진 복 이 철 우 이혜훈 이화수 장 광 근 임 동 규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동 영 정 범 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6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구 상 찬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무 성 김기 현 김동성 김 낙 성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 곤 金先東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 성 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 재 경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균 김 정 훈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환 김 학 송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혜 성 김호연 나 성 린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지 워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변 재 일 서 병 수 백 재 현 서 상 기 서종표 선경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건 신지호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홍 준 양 승 조 오 제 세 안 효 대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유성엽 유일호 원 희 목 유기준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유 석 용 이두아 유 영 이 경 재 이 낙연 이 범 래 이상득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정선 이 종 구 이진복 이 철 우 이 한 성 이혜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수 성 정 동 영 정 범 구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 하 균 정 장 선 정 진 섭 정태근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주 광 덕 조 진 형 주 호 영 진성호 차 명 진 진 영 추 미 애 최경희 최병국 최규성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준 표 황 진 하 황 영 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53인)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천 강 승 규 고 승 덕 구 상 찬 권성동 권 경 석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성 곤 김성동 김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충 환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김호연 나성린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준 선 박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혀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선경식 성 윤 환 손 범 규 서 종 표 송 광 호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신 상 진 신 성 범 신지호 건 안 경 률 안 규 백 양 승 조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워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이경재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범 래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윤 석 이인기 이정선 이종구 이진복 이 철 우 이 한 성 이혜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병 완 장 광 근 장 유 석 전 여 옥 정 범 구 전 재 희 전 혜 숙 정 동 영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장 선 정의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차 명 진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진 하

기권 의원(4인)

신 학용 안 홍 준 이상득 조 승 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4인)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구 상 찬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무성 김기 현 김동성 김 낙 성 김 상 희 김성 관 김성동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태 환 김 혜 성 김호연 나 성 린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지 워 배 영 식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형 서병수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선 경 식 성 윤 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지호 신 학 용 신 건 신 성 범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제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유 상 일 유 석 용 이경재 이 낙 연 이두아 이 범 래 이 상 득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이용섭 이 윤 석 이인기 이 종 구 이진복 이정선 이 철 우 이 한 성 이혜훈 이 화 수 장 광 근 임동규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동 영 정 수 성 정범구 정 영 희 정 양 석 정 옥 임 정의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진 형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최경희 최규성 진 옂 최병국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영표 홍일 표 홍 준 표 황 진 하 황 영 철

기권 의원(1인)

차 명 진

(이용섭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54인, 기권 의원 1인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4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구 상 찬 권경석 권 택 기 권성동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선동 김성 곤 金先東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 영 록 김 영 환 김세연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워 김 충 환 김 태 화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김호연 나 성 린 박 병 석 문 회 상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지 원 박 준 선 배 영 식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현 서병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선 경 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신 성 범 신 지 호 신 학 용 건 안 경률 안 규 백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우 제 창 원 유 철 오 제 세 워 혜 영 워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 성 엽 유 일 호 유 정 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 범 래 이 상 득 이 성 남 이 애 주 이성헌 이 용 섭 이 유 석 이정선 이 인 기 이종구 이진복 이 철 우 이 한 성 이혜훈 이화수 장 광 근 임 동 규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동 영 정 범 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주 광 덕 주호영 조 진 형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경희 짓 영 최병국 추 미 애 한 기 호 최 규 성 홍 영 표 홍 준 표 한 선 교 허 원 제 황 영 철 황 진 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2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 현 김무성 김 낙 성 김 동 성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 재 경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김호연 나성 린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은 희 배 영 식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병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선 경 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숙미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지호 신 신 성 범 신 학 용 건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우 제 창 원 유 철 오 제 세 원 혜 영 유기준 원 희 룡 원 희 목 유 일 호 유 정 복 유성엽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유 영 이경재 이 낙연 이두아 이 범 래 이상득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종 구 이 유 석 이인기 이정선 이한성 이진복 이 철 우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유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동 영 정수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진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전 혁 주 광 덕 조 진 형 진 성 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추 미 애 최병국 최경희 최규성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영 표 홍 준 표 황 진 하 홍 일 표 황 영 철 반대 의원(1인)

조 승 수

기권 의원(3인)

정범구 정 옥 임 주 호 영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2인)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구 상 찬 권 경 석 권 택 기 권성동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선동 김성 곤 김 상 희 金先東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 영 록 김세연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김호연 나성린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지 원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배 은 희 배 영 식 백성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병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선 경 식 손 범 규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신 성 범 건 신 지 호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일 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유 영 이경재 이 낙연 이두아 이 범 래 이 상 득 이성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유 석 이정선 이인기 이진복 이종구 이 철 우 이한성 이 혜 훈 이화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동 영 정 범 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희	최 규 성	최 병 국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진 하

최규성 최병국 추 미 애 한 기호 한 선 교 홍일 표 허 원 제 홍 영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진 하 기권 의원(5인) 구 상 찬 손 숙 미 안 홍 준 이 경 재 정 옥 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권성동 강 승 규 고 승 덕 권 경 석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 동 성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세연 김성식 김성회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 재 경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충조 김 충 환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문 희 상 김혜성 김호연 나성 린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박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서종표 선 경 식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건 신 성 범 신지호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양 승 조 우 제 창 안 효 대 원 희 룡 원 희 목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일 호 유정복 유성엽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유 영 이두아 이상득 이 낙 연 이 범 래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 정 선 이종구 이 혜 훈 이진복 이 철 우 이한성 장 병 완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유 석 전 혜 숙 전 여 옥 전 재 희 정양석 정 동 영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장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차 명 진 최 경 희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 안(대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4인)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구 상 찬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림 김기현 김 무 성 김 낙 성 김 동 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 선 동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용 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학 송 김혜성 김호연 나 성 린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우 순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형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서 종 표 선 경 식 손 숙 미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신 성 범 신지호 신 학 용 건 안 경 률 안 홍 준 안 규 백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일 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경재 윤 영 이 낙 연 이두아 이 범 래 이상득 이 성 남 이 성 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윤 석 이인기 이정선 이 종 구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혜훈 임동 규 이 화 수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동 영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양 석 정의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추 미 애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워 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강길부 변재일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 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2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구 상 찬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무성 김 낙 성 김 동 성 김선 동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 영 록 김성회 김 세 연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학 송 김 태 워 김 태 화 김 학 용 김혜성 김호연 나성 린 문 회 상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숙미 선경식 성 윤 환 송광호 송 민 순 신 신 성 범 건 신지호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제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희 룡 유 일 호 워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유 영 이경재 이두아 이 범 래 이상득 이성헌 이 애 주 이 성 남 이 용 섭 이인기 이정선 이 유 석 이종구 이 철 우 이 진 복 이 찬 열 이 혜 훈 이화수 이 춘 석 이 한 성 장 윤 석 임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동 영 정 범 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주 광 덕 주호영 조 진 형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경희 짉 옂 최병국 추 미 애 최규성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진 하 (박영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52인, 기권 의원 없음)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권경석 강 승 규 고 승 덕 구 상 찬 권 택 기 권성동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성동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 세 연 김성회 김 영 록 김 영 우 김용구 김 을 동 김 영 환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김호연 나성 린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준 선 박 지 원 백 재 현 배 은 희 백 성 운 배 영 식 서 병 수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종 표 선경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건 신 성 범 신 지 호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유성엽 원 희 룡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정 복 유 일 호 유 정 현 유 상 일 윤 석 용 유 영 이 경 재 이 두 아 이 애 주 이 범 래 이상득 이성헌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정선 이 종 구 이진복 이 차 열 이 철 우 이한성 이 춘 석 이혜훈 이화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재 희 전 여 옥 전 혜 숙 정 동 영 정범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이 성 남

대한민국 정부와 마샬군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투표 의원(154인)찬성 의원(154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구 상 찬 권 경 석 권 택 기 권성동 김 광 림 권 영 진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무성 김선 동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용 태 김 영 환 김용구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호연 나성 린 김 혜 성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준 선 배 은 희 박 지 워 배 영 식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병수 서 상 기 서종표 선 경 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지호 신 성 범 신 학 용 신 건 심대평 안 경률 안 규 백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정 복 유기준 유성엽 유 일 호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유 영 이경재 이두아 이 범 래 이상득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종 구 이 유 석 이인기 이정선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춘석 이 한 성 이혜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전 재 희 장 병 완 장 윤 석 전 혜 숙 정 동 영 정범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전 혁 주 광 덕 조 원 진 조 진 형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희 최 규 성 최 병 국 최종원 추 미 애 한 선 교 한 기 호 허 원 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진 하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56인)찬성 의원(153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천 강 승 규 고 승 덕 권경석 구 상 찬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무성 김 동 성 김 상 희 김선동 김 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 영 우 김 영 록 김 영 환 김용구 김 을 동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김호연 나성린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준 선 박 지 워 배 영 식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선 경 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성 범 신 학 용 신 신 지 호 건 심대평 안 경률 안 홍 준 안 규 백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회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경재 윤 영 이 두 아 이 범 래 이 상 득 이석현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이용섭 이종구 이 윤 석 이 인 기 이정선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춘 석 이 철 우 이 한 성 이혜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동 영 정 범 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정 장 선

정 해 걸

조 원 진

주 호 영

최경희

추 미 애

홍 영 표

황 진 하

정의화

정 하 균

조 승 수

주 광 덕

차 명 진

최 종 원

허 원 제

황 영 철

정 옥 임

정태근

조 배 숙

조 진 형

최 병 국

한 선 교

홍 준 표

영

진

정 진 섭

조 경 태

조 전 혁

진성호

최 규 성

한 기 호

홍일 표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진성호 진 수 회 짓 영 차 명 진 최경희 최병국 최규성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영 표 홍일 표 황 영 철 홍 준 표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변 재 일 주호영 추 미 애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5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구 상 찬 권경석 고 승 덕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무성 김 낙 성 김 동 성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세연 김성식 김성회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 재 윤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화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김호연 박 병 석 나 성 린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영 아 박 준 선 박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서종표 선경식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민순 송 영 선 신 성 범 신 학 용 신 건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홍 준 우 제 창 안 효 대 양 승 조 오제세 워 유 철 워 혜 영 워 희 룡 워 희 목 유정복 유기준 유 성 엽 유 일 호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영 유 이경재 이두아 이 범 래 이 상 득 이석현 이 애 주 이성남 이성헌 이 용 섭 이 윤 석 이인기 이정선 이종구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춘석 이 한 성 이혜훈 이 화 수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재 희 전 혜 숙 전 여 옥 정 동 영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사 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구 상 찬 권경석 권 택 기 권성동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선동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 영 우 김용구 김 영 록 김 영 환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김호연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우 순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배 영 식 서 병 수 서종표 선경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학 용 신 신 성 범 건 심대평 안 경률 안 홍 준 안 규 백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회 목 유기준 유일호 유 성 엽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유 석 용 이경재 윤 영 이 두 아 이 범 래 이 상 득 이석현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이용섭 이 종 구 이 윤 석 이 인 기 이정선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춘 석 이 철 우 이 한 성 이혜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동 영 정 범 구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기권 의원(2인)

신지호 원희룡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50인)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수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성 천 권경석 강 승 규 고 승 덕 구 상 찬 권 택 기 권성동 김 광 림 권 영 진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무성 김 상 희 김성동 김선 동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용구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문 희 상 김호연 김 혜 성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배 영 식 박 준 선 박 지 워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선경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성 범 신지호 신 건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유 석 용 윤 옂 이경재 이두아 이 범 래 이 상 득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종구 이 윤 석 이 인 기 이정선 이진복 이 차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혜훈 이화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범 구 전 혜 숙 정 동 영 정수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 호 영 진성호 진 수 희 진 옂 차 명 진 최경희 최병국 최규성 최 종 워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진 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 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9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권경석 권성동 권 택 기 권 영 진 김 광림 김기현 김무성 김 낙 성 김 동 성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재 경 김 을 동 김 재 윤 김 정 김 진 표 김 충 환 김 진 애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박 병 석 김혜성 김호연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준 선 박지 워 배 영 식 배 은 희 백성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선경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송광호 손 숙 미 송 영 선 송 민 순 신 건 신 성 범 신지호 신 학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양 승 조 우 제 창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혜 영 워 희 목 원 희 룡 유기준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영 이경재 윤 이두아 이 범 래 이상득 이 성 남 이성헌 이애주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정선 이종구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한성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유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동 영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수 주 광 덕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홍일 표 황 영 철 홍 영 표 홍 준 표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안 홍 준 유성엽

○출석 의원(23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종 강 승 규 강 성 천 강 창 일 고흥길 곽 정 고 승 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길 권 택 기 권 영 세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동성 김 동 철 김 낙 성 김무성 김 상 희 김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수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용구 김 을 동 김용 태 김 유 정 장 수 김 재 윤 김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희 철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나성 린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 영 선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선 경 식 서 종 표 송 광 호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신 상 진 건 신 성 범 신 학 용 심 대 평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목 원 희 룡 유기준 유선호 유 일 호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재 중 유정 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이강래 이경재 이두아 이 명 규 이 낙 연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상권 이상득 이 상 민 이석현 이 성 남 이 성 헌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인기 이정희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종혁 이 진 삼 이 차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혜훈 0] 한 성 이 화 수 임 동 규 해 규 장 광 근 임 장 병 완 장 윤 석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몽 준 전 정 동 영 정미경 정 범 구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영 희 정 옥 임 정 정 의 화 정 장 선 정 태 근 정 진 섭 정 해 걸 정 하 균 정희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진 래 주 광 덕 조 전 혁 조 진 형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경환 진 영 최경희 최 규 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인 기 추 미 애 최 재 성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태 열 홍 재 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개의 시 재석 의원(183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종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현 김동성 김 낙 성 김동철 김 무 성 김선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수 성 식 김성조 김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재 경 김 재 균 김 김 재 윤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충조 김 태 환 김 진 표 김 태 원 김호연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박 기 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선경식 손 숙 미 광 호 손 범 규 송 송 민 순 신 성 범 신 지 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산회 시 재석 의원(151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김 광 림 권 택 기 김 기 현 김 낙 성 김동성 김무성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충 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태 환 김혜성 김호연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선 경 식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송 광 호 성윤환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건 신 성 범 안 경 률 신지호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규 백 안 홍 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일 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경재 이 두 아 이 범 래 유 영 이 애 주 이상득 이성남 이성헌 이 용 섭 이 유 석 이인기 이정선 이종구 이진복 이 철 우 이 찬 열 이 춘 석 이 한 성 이혜훈 이화수 임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유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동 영 전 혜 숙 정범구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 장 선 정진섭 정 해 걸 조 경 태 정 태 근 정 하 균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 호 영 진성호 진 수 회 진 영 최경희 최 규 성 최 병 국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홍일 표 한 선 교 홍 영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진 하

○출장 의원(3인)

김옥이 안형환 장세환

○청가 의원(12인)

김 부 겸 김 우 남 남 경 필 류 근 찬 박 선 숙 송 훈 석 신 낙 균 이 윤 성 이 종 걸 이 춘 식 최 연 희 최 영 희

○국회사무처

입 법 차 장 김 성 곤 의 사 국 장 한 공 식

○출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 성 화 국 방 부 장 관 김 관 진 행정안전부장관 맹 혅 규 보건복지부장관 읶 채 门 특 임 장 관 卫 훙 길

○출석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제1차관 윤 신 제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창 경 김 공정거래위원장 동 수 긲 동 금 융 위 원 장 김 석

【보고사항】

○의장직무대리 지정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정 의 화 2월 9일부터 국회의장 사임의 건이 처리될 때까지

(2012, 2, 9)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홍 재 형

2월 24일부터 국회부의장(정의화)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2012, 2, 24)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정의 화

2월 27일부터 국회부의장(정의화) 귀국 시부터 국회의장 사임의 건이 처리될 때까지

(2012. 2. 27)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기획재정	오제세	민주통합당	2012. 2. 16
외교통상통일	구상찬	새누리당	2012. 2. 24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천정배	문화체육관광	환경노동		
	방송통신	10年6		2012.
홍영표	환경노동	문화체육관광	n)Z	2. 22
		방송통신		
이상민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	민주 통합당	
		방송통신		2010
홍영표	문화체육관광	화경노동		2012.
	방송통신	1 社/6工方		2. 24
천정배	환경노동	교육과학기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노철래	윤상일	새누리당	2012. 2. 15

○교섭단체 명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연월일
한나라당	새누리당	2012. 2. 14

○의안 제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2. 2. 9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12. 2. 9 한기호·김세연·김용태·박민식· 박우순·이사철·이철우·정해결·정희수· 최연희 의원 발의)

2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12. 2. 9 서상기·권영진·조전혁·조진래·배은희·주호영·조원진·이철우·김선동·홍사덕·원희룡 의원 발의)

2월 9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 발의)

(2012. 2. 9 윤영·유일호·이정선·이두아· 조진래·김영록·강석호·정해걸·성윤환· 황영철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2. 2. 9 전현희·박기춘·김영록·변웅전· 김을동·김효석·박은수·주승용·이춘석· 백원우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2. 2. 9 전현회·박기춘·이춘석·김영록· 변웅전·주승용·백원우·김을동·정범구· 김효석 의원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2. 2. 9 전현희·박기춘·박은수·이춘석· 김영록·변웅전·주승용·백원우·김을동· 정범구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 발의)

(2012. 2. 9 전현희·박기춘·김영록·변웅전· 주승용·김을동·김효석·박은수·이춘석· 백원우 의원 발의)

2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

(2012. 2. 10 정범구·신건·유선호·문학진·

김재균・이낙연・주승용・백재현・조배숙・

이춘석 · 이윤석 · 강창일 · 이강래 · 김영록 ·

안민석·정동영·김동철·최규성·김재윤·

박은수 · 송훈석 · 김상희 · 김진애 · 박지원 ·

이찬열 · 신학용 · 최규식 · 김우남 · 이미경 ·

조정식 · 추미애 · 김효석 · 김춘진 · 강성종 ·

조경태 · 김희철 · 정세균 · 박영선 · 홍영표 ·

최인기 • 변재일 의원 발의)

2월 13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2. 2. 10 조경태·정동영·서종표·최규식· 박선숙·이춘석·김진애·金先東·이찬열·

이상민 · 장세환 · 김재윤 · 김재균 · 강창일 ·

한구김영록 의원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2. 2. 10 조경태·정동영·서종표·최규식· 박선숙·이춘석·김진애·金先東·이찬열· 이상민·장세환·김재윤·김재균·강창일· 김영록 의원 발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2. 2. 10 조경태·정동영·서종표·최규식· 박선숙·이춘석·김진애·金先東·이찬열· 이상민·장세환·김재윤·김재균·강창일· 김영록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3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李玲愛 의원 대표발의) (2012. 2. 10 李玲愛·이두아·최경희·정영희· 김혜성·정옥임·김정·이성남·임영호· 정미경 의원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희 의원 대표발의)

(2012. 2. 10 최경희·정영희·이종구·김정· 윤석용·김충환·김소남·김무성·李玲愛· 김성태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희 의원 대표발의)

(2012. 2. 10 최경희·정영희·이종구·윤석용· 김정·정미경·박선영·이인기·김충환· 김소남·김세연·고흥길·김무성·원희룡· 李玲愛·김성태 의원 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2. 2. 10 김세연·김성수·김태원·김을동· 박대해·유재중·이은재·정갑윤·한기호· 황영철·현기환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2. 10 정부 제출)

2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 발의)

(2012. 2. 10 이화수 · 유일호 · 윤영 · 이명규 ·

이두아·유재중·김소남·김학용·김영우· 백성운·권경석·손범규 의원 발의)

2월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2. 2. 13 심재철·허원제·김정훈·유정복· 박선영·강명순·손숙미·김소남·전여옥· 배영식·유정현·나성린·김옥이·강성천· 김동성·박상은·권택기·신지호·이애주· 정옥임·신상진 의원 발의)

2월 1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2012. 2. 13 김재균·박은수·강창일·박주선· 김동철·정장선·조정식·이용섭·장세환· 주승용 의원 발의)

2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 발의)

(2012. 2. 13 손범규·윤석용·김태원·김재경· 정두언·유일호·이인기·이진복·안경률· 강성천·황진하 의원 발의)

2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장(박희태) 사임의 건

(2012. 2. 13 박희태 의원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2. 2. 14 주승용·이춘석·김재균·전현희· 김성곤·이낙연·최영희·박은수·정장선· 노영민·김영진 의원 발의)

2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2. 2. 15 전현희·주승용·김영록·이낙연· 박은수·이춘석·이윤석·김재균·변웅전· 조경태 의원 발의)

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유석용 의원 대표발의)

(2012. 2. 15 윤석용·손범규·이윤성·김세연· 유성엽·정옥임·정영희·최경희·윤영· 김성수·강명순 의원 발의)

2월 16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2. 2. 17 이명수·김용구·임영호·류근찬· 변웅전·권선택·김을동·심대평·이인제· 김낙성 의원 발의)

2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계철) 인사청문 요청안

(2012. 2. 17 대통령 제출)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2012. 2. 20 남경필·황영철·임해규·홍일표· 주광덕·김성식·구상찬·현기환·김정권· 정태근 의원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2012. 2. 20 남경필·황영철·임해규·홍일표· 주광덕·김성식·구상찬·현기환·김정권· 정태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최병덕) 인사 청문요청안

(2012. 2. 20 대법원장 제출)

2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중단 촉구 결의안

(2012. 2. 23 박선영·강명순·권선택·김낙성· 김동성·김세연·김용구·김창수·김춘진· 김형오·류근찬·변웅전·신낙균·심대평· 심재철·이낙연·이명수·이인기·이인제· 이재선·이진삼·이회창·임영호·윤상현· 장광근·정의화·조순형·조전혁·황진하 의원 발의)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 2. 23 구상찬·권영진·윤상현·조원진· 김학용·정병국·김호연·조전혁·홍사덕· 김선동·남경필·이정현·진영·권택기· 김무성·유승민 의원 발의)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 2. 23 김동철 의원 외 88인 발의) 이상 3건 2월 23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2. 2. 24 유기준·정옥임·황진하·김영우·

주호영·최병국·안상수·정몽준·정해결· 정희수 의원 발의)

2월 24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명숙) 선출안

(2012. 2. 27 의장 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1. 10. 27 정무위원장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12. 2. 27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2. 12. 27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11. 12. 23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 2012. 2. 8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안(대안)

(2012. 2. 9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아 니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 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이상 5건 2012. 2. 27 정무위원장 제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1. 12. 30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2. 2. 27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1. 12. 2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1. 12. 27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2. 2. 9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2. 2. 10 지식경제위원장 제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11. 12. 27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1. 12. 26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1. 10. 26 국토해양위원장 제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11. 11. 17 국토해양위원장 제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1. 12. 21 국토해양위원장 제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11. 12. 26 국토해양위원장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대안)

(2012. 2. 8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 장 제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1. 12. 22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제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 안(대안)

(2011. 10. 10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12. 2. 27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2009. 3. 5 김재균·송민순·김동철·김재윤· 최철국·노영민·양승조·주승용·강기정· 장세환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9. 2. 4 강창일・김춘진・박은수・양승조・

장세환 · 송민순 · 김영진 · 김우남 · 이윤석 ·

이정희・김성순・송영길・김성곤・김상희・

우제창・유성엽・김진표・이시종・이용삼・

안효대·홍희덕·김재윤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09. 3. 6 양승조·박은수·강창일·백원우· 전현희·최영희·김우남·홍재형·이석현· 최재성·최규식·최문순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2009. 6. 25 이정희·조승수·김우남·유원일· 유성엽·박선숙·신학용·곽정숙·홍희덕· 권영길·김재윤·강기갑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09. 12. 16 김세연·권택기·유성엽·조경태· 김부겸·김재윤·김성수·김춘진·박순자· 김충조·김정훈·황우여·박선영·김영진· 송민순·이미경·김금래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 발의)

(2011. 12. 6 윤영·정희수·윤석용·이화수· 허천·노철래·강길부·김성수·손숙미· 성윤환 의원 발의)

(이상 6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국회운영위원장 보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0. 3. 26 조정식·박주선·조영택·최영희· 전혜숙·박기춘·문학진·김상희·김진애· 박은수·홍재형 의원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09. 12. 30 조정식·박주선·조영택·최영희· 전혜숙·박기춘·문학진·김상희·김진애· 박은수·홍재형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8 김영선·심재철·김용태·권택기·정태근·정두언·한기호·장광근·이용섭·신건·김동철·이사철·임영호·이진복·현기환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2009. 3. 30 공성진·강석호·권택기·김충환· 손범규·신영수·안상수·양정례·이정선· 이한성·이해봉·정영희·조원진·황영철 의 원 발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6. 10 정부 제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08. 7. 23 서병수·한선교·김태원·이해봉· 안상수·양정례·현경병·유성엽·박종희· 허원제·이진삼·김종률·이한성·신상진· 이혜훈·박보환·허태열·박상돈·이성남· 강석호·구본철·김성태 의원 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2008. 11. 19 주광덕·김성식·강석호·이명수· 권영진·김성태·나성린·권택기·고승덕· 남경필·윤석용·정미경 의원 발의)

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2008. 10. 31 장광근·고승덕·김태원·정영희· 안상수·배영식·신영수·김효재·박종희· 서청원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1. 2. 11 정희수·윤영·김정권·강용석· 정해걸·안홍준·유기준·이사철·김금래· 김대화·이한성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2010. 1. 21 김재균·송민순·강창일·문학진· 최철국·박은수·김효석·김재윤·노영민· 김동철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09. 12. 8 신학용·박은수·박선숙·오제세·이시종·송영길·원혜영·최규식·이강래·우윤근·변재일·백재현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2009. 9. 8 김용태·정두언·현경병·조문환·박종희·이군현·신학용·이인기·이사철·이진복·조윤선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 (2009. 8. 21 권택기·강성천·이한성·유기준· 안홍준·신성범·손범규·황영철·이춘식· 김옥이·권영진·김성태·이해봉·배영식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009. 7. 10 이진복·박선숙·이성남·조문환·박민식·박종희·유재중·이인기·현기환·김태환·박대해·이한성·유기준·김무성·이경재·이명규·이종혁·조원진·최구식·김세연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문환 의원 대표발의)
(2009. 5. 7 조문환·홍정욱·이종혁·박준선· 심재철·고승덕·이진복·김금래·김용태· 강승규·진수희·정옥임·박종희·원희목· 이춘식·권택기·진성호·현기환·김선동· 유일호·박보환·윤영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2009. 2. 11 공성진·손숙미·김태원·백성운· 안상수·권택기·유성엽·황우여·김성수· 안효대·김소남·강석호·이한성·안홍준· 김충화·손범규·박대해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09. 2. 6 장제원·임동규·김태원·안홍준·홍장표·김성수·정병국·원희룡·조진래·권영진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문환 의원 대표발의)
(2008. 11. 7 조문환·김성회·김장수·이애주· 주광덕·강성천·원희목·이혜훈·이화수· 정진섭·김성식·홍사덕·백성운·황영철· 김학용·김효재·김충환·김선동·김성태· 서상기·임두성·권영진·정하균·권택기· 정진석·정옥임·정태근·김금래·현경병· 유기준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 발의)

(2008. 10. 6 진영·송민순·이인기·원희룡·황영철·이상민·안상수·권영진·고승덕·정영희·홍일표·이범래 의원 발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이상 2건 2008. 11. 28 정부 제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 발의)

(2008. 11. 19 주광덕·김성식·강석호·이명수· 권영진·김성태·나성린·권택기·고승덕· 남경필·윤석용·정미경 의원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9. 7. 3 박상돈·김성곤·김재윤·김정권· 김창수·심대평·이명수·이상민·임영호· 주승용 의원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 발의)

(2009. 3. 6 김영선·유원일·유성엽·김태원· 손범규·조윤선·안상수·권영진·정영희· 허태열·배영식·김성수 의원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 발의)

(2008. 10. 31 장광근·고승덕·김태원·정의화· 정영희·안상수·김영진·권영진·배영식· 신영수·김효재·박종희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윤선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4 조윤선·박희태·이사철·이진복· 이한구·김용태·김장수·안효대·김태원· 김충화·이해봉·박준선·박종근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성남 의원 대표발의)

(2009. 4. 10 이성남·고승덕·강봉균·이석현· 조경태·백재현·홍재형·김효석·박영선· 김동철·이미경·박선숙·김종률·유원일· 신학용·송영길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발의)

(2009. 3. 23 고승덕·강명순·이성헌·김용구·배영식·손숙미·윤영·허범도·김학용· 송영선·원희목·손범규·의원 발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발의)

(2009. 1. 6 홍준표 의원 외 171인 발의)

(이상 26건 폐기하기로 의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24 정부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

(2011. 5. 24 이종구·이한성·윤진식·유일호· 최경희·김금래·이명규·허원제·김성조· 김용구 의원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 발의)

(2011. 4. 29 이진복·현기환·이종혁·조문환· 박대해·허태열·김세연·허원제·조원진· 정의화·김무성·유재중·장제원·서병수· 안경률·유기준·박민식·조경태·김정훈· 이성헌·김형오 의원 발의)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2011. 8. 9 이종혁·이두아·고승덕·차명진· 서상기·조문환·현기환·김정훈·박대해· 정의화·허원제·유기준·김세연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남 의원 대표발의)

(2011. 6. 27 이성남·임영호·김정·조영택· 신건·최영희·박선숙·박병석·정동영· 김성곤·유성엽·유원일·김영진·조경태· 우제창·신낙균·김우남·조배숙·이춘석· 강창일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8 홍준표·이범래·김정권·배영식· 조문환 · 김기현 · 이종혁 · 황영철 · 김성회 · 정옥임 · 유정현 · 현기환 · 이은재 · 박준선 · 유영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발의)

(2011. 10. 19 박병석 의원 외 86인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영식 의원 대표발의)

(2011. 8. 31 배영식·정옥임·이한성·정희수· 유정현 · 이사철 · 김광림 · 장윤석 · 정해걸 · 김태환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012. 2. 6 이진복·박민식·강용석·최병국· 박보환・김호연・유재중・안홍준・이명규・ 현기환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2012. 2. 2 김영환·박은수·김진애·김상희· 전병헌 · 홍영표 · 신학용 · 김영록 · 이찬열 · 김학재·박영선·문학진·유선호·김희철· 서종표 · 김유정 · 장세환 · 박주선 · 김혜성 · 김태원 · 정태근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12. 1. 30 이주영·강길부·고흥길·김무성· 김옥이 · 나성린 · 신성범 · 유기준 · 이범관 · 이애주・이종구・임해규・정해걸 의원 발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2011. 7. 18 김용태·한기호·안형환·정두언· 진성호 · 정옥임 · 이사철 · 권택기 · 정해결 · 김을동 의원 발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 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8. 11. 28 정부 제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영식 의원 대표발의)

(2011. 8. 29 배영식·이한성·유기준·최경환·

김성식 · 유정현 · 신건 · 김광림 · 김재균 · 조원진 · 우제창 · 이사철 의원 발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2008. 11. 28 정부 제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9. 2. 24 김동철·박은수·홍재형·김성곤· 이용삼 · 최영희 · 김재균 · 박기춘 · 강기정 · 오제세 의원 발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배영식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9 배영식·권경석·김태환·우제창· 유정현 · 이사철 · 이한성 · 정미경 · 정해걸 · 정희수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9. 2. 24 김동철·박은수·홍재형·김성곤· 이용삼・최영희・김재균・박기춘・강기정・ 오제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

(2010. 1. 12 권택기·이한성·권영진·박준선· 김성태 · 윤석용 · 남경필 · 이사철 · 강성천 · 조문환·이화수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승덕 의원 대표발의)

(2010. 9. 28 고승덕·김성수·김정·이종혁· 공성진 · 배영식 · 김영우 · 유기준 · 나성린 · 송민순·황영철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사철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9 이사철·송훈석·이윤석·김우남· 정해걸 · 정희수 · 한기호 · 김태환 · 안형환 · 박준선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0. 11. 8 박선숙·박은수·신건·이용섭· 유선호 · 장세환 · 김상희 · 최규성 · 백재현 · 김효석 · 박우순 · 강창일 · 최문순 · 문학진 · 김재윤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2011. 1. 21 김용태·한기호·정두언·차명진· 김성태 · 이사철 · 배영식 · 정옥임 · 권택기 · 임영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2011. 1. 31 김용태·한기호·정두언·차명진· 이사철·배영식·정옥임·권택기·임영호· 이진복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1. 4. 7 박선숙·최규성·송민순·조영택· 김상희·장세환·김우남·유선호·추미애· 박영선·강기정·김재윤·문학진·원혜영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사철 의원 대표발의)

(2010. 6. 25 이사철·송훈석·박준선·강석호· 현경병·고승덕·조원진·김금래·임동규· 이은재 의원 발의)

(이상 2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6건 정무위원장 보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12 이용섭·최종원·신건·김효석· 김동철·박주선·강기정·백재현·이미경· 송민순·김진애·김재윤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 발의)

(2010. 5. 24 윤영·장광근·노철래·김무성· 안효대·허천·강길부·정갑윤·권경석· 정희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제 의원 대표 발의)

(2011. 9. 9 이인제·심대평·변웅전·박주선· 최규성·김창수·오제세·원유철·김낙성· 이재선·박상은·송영선·송훈석·장윤석· 권선택·김혜성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 발의)

(2011. 8. 9 이종혁·정옥임·윤석용·김태원·김영선·김을동·서상기·여상규·안경률·배은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 발의)

(2011. 8. 8 최인기・주승용・강기갑・김춘진・

김효석·유성엽·김성곤·조영택·강봉균· 문학진·김우남·정범구·김영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 발의)

(2011. 4. 6 조영택·전병헌·김재균·오제세· 박은수·유선호·김진표·이종걸·조배숙· 강창일·강기정·장병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30 김춘진·유선호·조영택·오제세· 김영진·안민석·김상희·김성곤·김재윤· 유성엽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

(2010. 11. 5 나경원·김성동·강승규·한선교· 김성태·이한성·신상진·유기준·신성범· 유정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

(2010. 8. 4 이철우·강석호·고승덕·김세연· 김재윤·정두언·정수성·정해걸·정희수· 조문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 발의)

(2010. 9. 17 유기준·송훈석·김우남·이한성· 고승덕·이명수·김성수·강석호·황영철· 신성범·정해걸·여상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 발의)

(2010. 7. 16 황영철·권영진·박준선·정갑윤· 이해봉·신성범·강성천·이한성·정해걸· 김성수·김성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 발의)

(2010. 5. 12 강기갑·홍희덕·권영길·김춘진· 최철국·김낙성·조배숙·곽정숙·이정희· 김영진·유원일·김재윤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 발의)

(2010. 5. 6. 박순자·박대해·김소남·유성엽·임동규·이한성·안홍준·신성범·이성현·정의화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 발의)

(2009. 12. 8 강성천·조원진·김태원·정갑윤·

김세연 · 이윤성 · 김옥이 · 김재윤 · 박준선 · 원혜영 · 박대해 · 이화수 · 이찬열 · 정미경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 발의)

(2009. 12. 7 문학진·강창일·김동철·김재균· 박기춘 · 백원우 · 우제창 · 이범관 · 조경태 · 조정식·최재성·황진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 발의)

(2010. 2. 11 김효석·김영록·조경태·이석현· 김동철 · 전현희 · 김영진 · 오제세 · 박선숙 · 김재균 · 신건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2010. 3. 22 박기춘·김영진·양승조·이해봉· 최규성 · 이찬열 · 최재성 · 정갑윤 · 박주선 · 전병헌·조정식·문학진·김성곤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

(2009. 12. 7 전혜숙·양승조·전현희·김효석· 백원우 · 박은수 · 최영희 · 강봉균 · 오제세 · 강성종·강운태·백재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성운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3 백성운・김정권・강길부・강승규・ 권택기 · 김영우 · 조해진 · 여상규 · 정태근 · 장광근 · 유정복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

(2009. 11. 2 백재현·조경태·김효석·강운태· 이미경 · 안민석 · 김영진 · 조배숙 · 전혜숙 · 홍영표 · 김진표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호연 의원 대표발의) (2011. 8. 31 김호연·김성곤·김소남·김혜성· 박준선 · 윤석용 · 윤진식 · 이명규 · 이사철 · 이성남 · 이한성 · 임동규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4 백재현·오제세·신학용·유선호· 강창일 · 김영진 · 최규성 · 문학진 · 박우순 · 이찬열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 (2011. 7. 5 홍재형·변재일·김우남·강기정· 노영민 · 이낙연 · 김재균 · 주승용 · 양승조 · 신건·김춘진·오제세·유선호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1. 6. 2 김우남·이경재·유성엽·조영택· 강기정 · 조경태 · 김영록 · 정해걸 · 최규성 · 김효석 · 김재유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원 의원 대표발의) (2011. 3. 30 최종원·이종걸·김상희·조영택· 김재균 · 김우남 · 박우순 · 안민석 · 강기정 · 김부겸 · 김재윤 · 주승용 · 조경태 · 장세환 · 양승조 · 정장선 · 전병헌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1. 2. 10 김춘진·손범규·강창일·유선호· 유성엽 · 김호연 · 김성곤 · 김성순 · 김영진 · 김영록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1. 1. 28 이찬열·장세환·이미경·송민순· 박주선 · 박기춘 · 안민석 · 추미애 · 이춘석 · 최재성 · 백원우 · 강기정 · 김우남 · 신학용 · 김진표 · 박은수 · 홍영표 · 김영진 · 박영선 · 최영희 · 백재현 · 강창일 · 김부겸 · 김재윤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11. 1. 6 김효석·유선호·신낙균·김우남· 김영록 · 김유정 · 김성곤 · 송훈석 · 오제세 · 최규성 · 추미애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2010. 12. 27 신낙균・손범규・송민순・유선호・ 김효석 · 최재성 · 박은수 · 최인기 · 강용석 · 원혜영 · 김재윤 · 추미애 · 박주선 · 강기정 · 김영진 · 안규백 · 문학진 · 박우순 · 서종표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0. 12. 9 김우남·주승용·유성엽·박은수· 최재성 · 신건 · 장병완 · 조정식 · 조경태 · 최규성·변재일·강창일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0. 11. 3 장병완·박은수·양승조·유선호· 이춘석 · 전혜숙 · 전현희 · 주승용 · 최문순 · 최종워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10. 10. 1 이학재·김정·이한성·주광덕· 이경재 · 최경희 · 김선동 · 김태원 · 손범규 · 조원진 · 이진복 · 김옥이 · 한선교 · 이화수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발의) (2010. 8. 20 고승덕·이한성·이철우·원유철·

- 강명순·박준선·성윤환·황영철·김을동· 이정선 · 김효재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0. 7. 20 김춘진·조배숙·최재성·김유정· 김영진·강창일·신낙균·안민석·오제세· 변재일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0. 6. 24 신학용·이찬열·문학진·강창일· 유원일 • 박선숙 • 장세환 • 노영민 • 이강래 • 강기정·조영택·안규백·서종표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0. 6. 14 김춘진·이성헌·김영록·김영진· 이경재 · 안민석 · 최재성 · 강기정 · 박은수 · 이찬열·조배숙·김유정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0. 6. 1 김학용ㆍ이범래ㆍ이은재ㆍ이진복ㆍ 유정현 · 정해걸 · 김성수 · 조진래 · 김성태 · 황영철·이애주·김정권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10. 5. 12 강기갑·홍희덕·권영길·김춘진· 최철국 · 김낙성 · 조배숙 · 곽정숙 · 이정희 · 김영진 · 유원일 · 김재윤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0. 3. 22 김영선·김성태·김영진·김태원· 신상진 · 안효대 · 이인기 · 이정선 · 이한성 · 한선교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9. 12. 3 진성호·강석호·원희룡·김성순· 정진석 · 이한성 · 손범규 · 김금래 · 이인기 · 홍사덕·손숙미·김동성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0. 1. 26 임영호·김창수·김용구·김낙성· 이명수 · 권선택 · 이상민 · 류근찬 · 변웅전 · 이재선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 (2010. 1. 20 권택기·이성헌·이사철·권영진· 현경병 · 박선숙 · 이한성 · 이화수 · 조문환 · 이진복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09. 12. 9 전병헌·서갑원·강기정·백재현· 김부겸 · 조영택 · 변재일 · 양승조 · 박은수 · 김재균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2009. 12. 7 김진표·김우남·김성순·박기춘· 김상희·강창일·이찬열·양승조·강성종·

- 김부겸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6 박병석·이성남·박선숙·양승조· 서종표 · 안규백 · 김부겸 · 김성곤 · 김성순 · 우제창·김재윤·백재현·김영록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9. 11. 24 진수희·김용태·공성진·정태근· 정두언・강명순・차명진・나성린・이두아・ 워희목 · 이애주 · 김재경 · 남경필 · 임해규 · 이군현 · 김소남 · 원희룡 · 박준선 · 이종구 · 안형환 · 조문환 · 안효대 · 김영우 · 권성동 · 김성회ㆍ김효재ㆍ김금래ㆍ임동규ㆍ조윤선ㆍ 정양석 · 신영수 · 이춘식 · 현경병 · 김광림 · 이진복ㆍ이은재ㆍ권택기ㆍ정옥임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09. 11. 2 백재현·조경태·김효석·강운태· 이미경 · 안민석 · 김영진 · 조배숙 · 전혜숙 · 홍영표·김진표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영호 의원 대표발의) (2009. 3. 12 임영호·강운태·배영식·권선택· 류근찬 · 정영희 · 심대평 · 김창수 · 박상돈 · 이재선 · 김낙성 · 윤영 · 유성엽 · 김성곤 · 이명수 · 이진삼 · 이상민 의원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 의)
 - (2009. 2. 9 최영희·강기정·김성순·박은수· 백원우 · 서갑원 · 송민순 · 송영길 · 안민석 · 양승조 · 이미경 · 이성남 · 이용섭 · 전병헌 · 전현희·전혜숙·최재성 의원 발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1. 4. 7 이낙연·김세연·박은수·박우순· 김정권 · 김영우 · 강봉균 · 김호연 · 강창일 · 이명수·김성곤·최인기·권영세 의원 발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1. 2. 10 김춘진・손범규・강창일・유선호・ 유성엽ㆍ김호연ㆍ김성곤ㆍ김영진ㆍ김영록ㆍ 김성순 의원 발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10. 12. 9 최규성·강기정·김영록·김우남· 조영택 · 유선호 · 김재윤 · 박기춘 · 문학진 · 노영민·강창일·정범구·이윤석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
- 발의) (2011. 3. 30 김영선·이한성·주광덕·이종혁· 유승민 · 유성엽 · 이해봉 · 안효대 · 김선동 ·

이학재 · 한선교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9 김재윤·최규성·박은수·강창일· 권선택·홍희덕·김우남·송민순·이미경· 이찬열·최종원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 발의)

(2010. 10. 12 김영록·김영진·김춘진·박은수· 안규백·유원일·이춘석·전현희·조경태· 주승용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 (2010. 10. 4 변웅전·김성수·여상규·임영호· 권선택·이상민·이진삼·김옥이·김용구· 김창수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8. 6. 19 이명규·권경석·한선교·임두성·박종근·김성태·배영식·안상수·조전혁·유승민·강석호·이정현·김학용·조원진·우제창·이진복·박영아·김동성·박보환·김태원·이혜훈·김학송 의원 발의)

사회보험료의 부과 ·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08. 11. 7 이혜훈·이종구·정양석·강성종· 오제세·배영식·김광림·서병수·이광재· 나성린·최경환·구상찬·김재경 의원 발의)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09. 4. 23 김영록·김영진·최인기·안규백· 김우남·강운태·박주선·김동철·이윤석· 최영희·이용삼·이용섭·김효석·김성곤· 우윤근 의원 발의)

(이상 58건 폐기하기로 의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용접 의원 대표발의)

(2011. 8. 10 이용섭·최종원·김재윤·장병완· 이석현·강창일·김영진·강기정·송민순· 박은수·양승조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1. 7. 25 이혜훈·백재현·김금래·강길부· 박보환·한기호·박종근·김혜성·구상찬· 최경희·유승민 의원 발의)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 일부개정 법률안(이성남 의원 대표발의)

(2009. 2. 13 이성남·홍재형·강창일·전병현· 김우남·김재윤·김효석·김성곤·최문순· 이시종·박은수·이석현·이미경·김영진· 김동철·김상희·전현희·최철국·박선숙· 박주선·신학용·백재현·송민순·이용섭 의원 발의)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 일부개정 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2009. 6. 16 이종혁·김낙성·박준선·최인기· 김용구·서상기·이학재·조원진·김선동· 배은희 의원 발의)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 발의)

(2010. 4. 27 서병수·유기준·이해봉·이명수· 김태원·유성엽·박민식·정희수·권영진· 오제세·박대해·안홍준·한선교·이성헌 의원 발의)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강봉균 의원 대표 발의)

(2010. 2. 5 강봉균·강성종·홍재형·박선숙· 장세환·우제창·조배숙·임영호·변재일· 최인기·김효석·오제세 의원 발의)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 발의)

(2010. 9. 13 김광림·김성식·유일호·정양석· 나성린·강석호·장윤석·강길부·권경석· 오제세·김용구·김혜성 의원 발의)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남 의원 대표발 의)

(2008. 9. 11 이성남·김상희·김영진·김우남· 김재윤·김종률·문국현·문학진·박선숙· 박영선·박주선·백재현·송민순·송영길· 신학용·안규백·안민석·양승조·우제창· 이광재·이미경·이용섭·이정현·이종걸· 이춘석·장세환·전현희·전혜숙·조경태· 최문순·최영희·최재성·홍재형 의원 발의)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 발의)

(2011. 4. 4 이용섭·박선숙·장병완·양승조· 전혜숙·조영택·박주선·송민순·강기정· 김영진·강창일·김재균 의원 발의)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1. 3. 16 조배숙·송민순·최규성·박주선· 조경태·김영진·장세환·이석현·이종걸· 이용섭 의원 발의)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 발의)

(2010. 7. 16 이종걸·정동영·박영선·최문순· 안규백·김재균·장세환·안민석·이석현· 변재일 의원 발의)

(이상 11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0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2011. 6. 3 정부 제출)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2011. 8. 23 정부 제출)

대한민국 정부와 마샬군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이상 4건 2011. 11. 29 정부 제출)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2011. 12. 27 정부 제출) (이상 7건 원안대로 의결)

(수정하여 의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 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2011. 6. 24 최영희·강기정·곽정숙·김금래·김동철·김상희·김유정·김재윤·문희상· 박우순·박은수·박주선·백원우·백재현· 변재일·송민순·신낙균·양승조·원혜영· 이낙연·이미경·이성남·이애주·이찬열· 이춘석·전현희·전혜숙·정범구·조정식· 주승용·추미애·최재성 의원 발의)

중국의 탈북자 인권 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1. 10. 5 유기준·구상찬·김충환·김호연· 윤상현·이윤성·정몽준·주호영·최병국· 황진하·이상득 의원 발의)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중단 촉구 결의안

(2011. 10. 4 박선영·권선택·권영세·김동성·

김부겸 · 김세연 · 김소남 · 김영선 · 김영우 · 김용구 · 김학용 · 박상은 · 변웅전 · 서상기 · 신낙균 · 심재철 · 이석현 · 이인기 · 이회창 · 장광근 · 장세환 · 장윤석 · 조해진 · 주호영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발의)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2011. 10. 5 김동철·박주선·강창일·조영택· 원혜영·송민순·문학진·신낙균·문희상· 최재성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보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천 의원 대표발의) (2011. 12. 13 박상천·안규백·이진삼·김학송·문학진·김옥이·송영선·신학용·김장수·서종표·원유철·정미경·심대평·정세균 의원발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박상천 의원 대표발의)
(2011. 12. 13 박상천·안규백·이진삼·김학송· 문학진·김옥이·송영선·신학용·서종표· 원유철·정미경·심대평·정세균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국방위원장 보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1. 7. 22 김소남·최경희·이은재·정미경· 안효대·김성동·김성수·이정선·정해결· 정갑윤 의원 발의)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조 의원 대표 발의)

(2010. 4. 7 김충조·최인기·홍재형·김유정· 강기정·김영진·손범규·안규백·전현희· 김우남·신학용·김영록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 발의)

(2012. 1. 20 안효대·유정현·김소남·최경희· 정수성·백성운·김성조·손범규·신지호· 송광호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2011. 4. 14 김진표·전병헌·이찬열·남경필· 권영길·안홍준·홍사덕·김용구·김상희· 원혜영·정미경 의원 발의)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20 이인기·최경희·이윤성·김태원· 박보환 · 김소남 · 유정현 · 허천 · 임동규 · 김호연 · 이한성 · 신상진 · 정양석 · 황영철 · 유정복 · 최연희 · 이낙연 · 박기춘 · 원혜영 · 이춘석 · 김영진 · 안규백 · 전혜숙 · 김세연 · 정갑윤 의원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8. 9. 24 이인기 · 권경석 · 서상기 · 원유철 · 유정현 · 이무영 · 이윤석 · 이은재 · 장광근 · 장제워 의워 발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4. 25 정부 제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 (2011. 12. 12 정부 제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1. 29 정부 제출)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

(2009. 4. 3 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 송영길 · 백원우 · 최영희 · 강명순 · 이미경 · 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

(2009. 2. 26 이인기·임영호·유기준·한선교· 임동규・김태원・김소남・안상수・손범규・ 박보환 · 김충환 · 김성수 의원 발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 발의)

(2009. 9. 10 곽정숙·강기갑·권영길·이정희· 홍희덕 · 박은수 · 양승조 · 유성엽 · 유원일 · 이한성 의원 발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 발의)

(2010. 6. 18 이춘석・박은수・최철국・유선호・ 양승조 · 안규백 · 조정식 · 전현희 · 노영민 · 장세환 · 최규성 의원 발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9 안효대·장제원·유정현·최경희· 김태원 · 박대해 · 임동규 · 이인기 · 서병수 · 이사철 의원 발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2. 29 정부 제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세환 의원 대표발의)

(2010. 8. 3 장세환·이종걸·양승조·유선호· 강창일 · 최규성 · 이찬열 · 주승용 · 최재성 · 최규식 의원 발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9 조승수·권영길·최문순·유원일· 백원우 · 강기갑 · 이춘석 · 장세환 · 유성엽 · 전혜숙 · 박영선 · 조배숙 · 이종걸 · 유선호 · 김효석 의원 발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30 정부 제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5. 25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 류근찬 · 이재선 · 김용구 · 심대평 · 임영호 · 김낙성 의원 발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 7. 14 정부 제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 (2008. 12. 5 이군현·안경률·이애주·송민순· 이철우 · 박영아 · 정두언 · 김세연 · 임해규 · 이상민 · 정영희 · 김춘진 · 정갑윤 · 유정현 의원 발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11. 3. 14 이인기·진영·임동규·윤상일· 서상기 · 차명진 · 이정현 · 안홍준 · 고흥길 · 안효대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2010. 11. 16 강창일・김효석・최규성・송민순・ 장세환 · 이윤석 · 김영진 · 문학진 · 신낙균 · 조정식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 발의)

(2010. 10. 18 김소남·김정권·안형환·홍정욱· 이해봉 · 김정 · 이인기 · 조진래 · 이정선 · 김태워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2 김태원·김영선·손범규·김정훈· 유기준 · 정희수 · 유정복 · 이한성 · 유성엽 · 권경석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권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18 이상권·권영세·고흥길·손범규· 이명수·이윤성·이학재·정진섭·조전혁· 홍일표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운태 의원 대표발의)

(2009. 4. 14 강운태·전병헌·홍재형·오제세· 유성엽·김정권·임영호·홍희덕·이화수· 김재윤·노영민·노철래·양정례·김영록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배은회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7 배은희·이명규·이진복·강성천· 김금래·나성린·김세연·조문환·안효대· 최철국·권영길·차명진·이한성·권성동· 강길부·김성회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운태 의원 대표발의)

(2009. 11. 4 강운태·김성수·노철래·김재균· 백재현·김영록·김성태·송민순·김효석· 유성엽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발의)

(2010. 2. 2 고승덕·조승수·이한성·유성엽· 이철우·송민순·배영식·김재윤·김성태· 신영수·이해봉·유원일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10. 7. 23 임동규·이해봉·안상수·정갑윤· 이사철·조문환·김충환·이정선·김세연· 정해걸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 3. 28 정부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1. 11. 22 김우남·김춘진·이용희·이찬열· 조정식·조경태·김동철·김효석·김영록· 최인기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21 진영·김정권·안효대·김소남· 박보환·유정현·김무성·구상찬·박진· 김학용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1. 8. 31 김태원·손범규·권경석·이한성· 박대해·정희수·윤석용·임동규·유정현· 정해걸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

(2011. 12. 9 박은수·주승용·강창일·최영희·백원우·조영택·이미경·전현희·김부겸·양승조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2010. 8. 18 김세연·유기준·김혜성·유승민· 권영진·유성엽·김영진·송영선·김용태· 황우여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일 의원 대표 발의)

(2011. 5. 9 윤상일·송민순·안민석·양승조· 조정식·조배숙·서상기·공성진·이명수· 추미애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7. 14 정부 제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 발의)

(2011. 8. 17 이윤성·정해걸·손범규·최병국· 박상은·신학용·황진하·조진형·남경필· 송광호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2011. 8. 31 김태원·손범규·권경석·이한성· 박대해·정희수·윤석용·임동규·유정현· 정해걸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

(2011. 12. 9 박은수·주승용·강창일·최영희·백원우·조영택·이미경·전현희·김부겸·양승조 의원 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5. 26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11. 12. 13 이인기·김세연·김춘진·정미경· 유기준·정해결·이윤성·김성곤·김정훈· 이낙연·이경재 의원 발의) (이상 35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4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1. 3. 22 변재일·양승조·안민석·조정식· 원혜영·강기정·신낙균·김춘진·김진애· 최종원·유성엽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 발의)

(2011. 12. 21 서상기·정두언·이종혁·원희목· 김세연·박보환·조전혁·조진래·권영진· 임해규 의원 발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09. 5. 22 주승용·김재균·강창일·김영록· 강기정·김동철·박상돈·양승조·최철국· 노영민·이춘석·이시종·조정식·김성곤· 김기현·조배숙 의원 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2. 2. 3 변재일·양승조·유성엽·안민석· 박보환·서상기·김세연·김유정·조정식· 김성곤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 발의)

(2012. 2. 6 박보환·권영진·서상기·정두언· 김세연·김옥이·김태환·조전혁·이진복· 고흥길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12 정부 제출)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8 정부 제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1. 1. 3 조경태·김영록·조배숙·이종걸· 주승용·백재현·김우남·최규성·여상규· 정영희·박영선·권영길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1. 6. 1 권영진·박보환·한기호·정두언· 신성범·정수성·조전혁·황영철·서상기· 최구식·권택기·정갑윤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1 이재오·강승규·권택기·박상은· 손숙미·신상진·안경률·안상수·원희목· 이춘식·임동규·장제원·진영·조문환· 진수희·허천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 조경태·김우남·정영희·유선호· 전현희·김재윤·김재균·조정식·백재현· 강창일·조배숙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2. 1. 12 안민석·김상희·김영진·김유정· 김춘진·이상민·권영길·유성엽·서상기· 권영진·김선동·박보환·배은희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2. 1. 17 전병헌·김진표·주승용·이윤석· 박우순·김학재·홍영표·김상희·이찬열· 백재현·김유정·신학용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2012. 1. 30 원유철·유일호·이화수·정미경· 신영수·김기현·조진형·한기호·정수성· 김태원·박보환·신상진·황영철·권택기· 김장수·김성동·권영진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12. 2. 3 최영희·강창일·김상희·김유정· 김충조·문학진·박우순·박은수·백재현· 안민석·양승조·오제세·원혜영·이춘석· 장세환·전현희·조경태·주승용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2. 2. 3 변재일·양승조·유성엽·안민석· 박보환·서상기·김세연·김유정·조정식· 김성곤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2. 1. 26 배은희·이주영·나성린·김호연·김선동·김세연·정두언·유정현·안형환·김기현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 의원 대표 발의)

(2009. 7. 7 원희목·이춘식·현경병·손숙미·

오제세·김소남·박은수·전혜숙·권택기· 유정현·임동규·신성범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2009. 8. 27 안민석·김영진·김성곤·김재윤· 이석현·강창일·박영선·우윤근·최재성· 김영록·김진표·권영길·오제세·조승수· 김상희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0. 11. 3 권영진·윤석용·김성태·최구식· 신성범·서상기·김선동·주광덕·현기환· 박민식·구상찬·김성식·정태근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0. 14 정부 제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 발의)

(2011. 12. 26 서상기·정두언·이종혁·원희목· 김세연·박보환·조전혁·조진래·권영진· 임해규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2. 6 정부 제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일 의원 대표 발의)

(2010. 4. 27 윤상일·노철래·손범규·남경필· 정영희·이한성·오제세·김혜성·김효재· 이재선 의원 발의)

(이상 19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4건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보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동 의원 대표 발의)

(2011. 3. 9 김성동·김혜성·허원제·원희목· 한선교·오제세·이애주·강명순·손숙미· 이철우 의원 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7 전병헌·조배숙·유선호·김부겸· 김성곤·정장선·장병완·조영택·김우남· 전현희·백재현·김재윤 의원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7 전병헌·유선호·김부겸·김성곤· 정장선·장병완·조영택·김우남·전현희· 백재현·김재윤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1 한선교·김을동·성윤환·김정권· 현기환·이명규·김금래·김무성·조전혁· 박종근 의원 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8. 12. 4 김동철 · 이한성 · 김성수 · 송영길 · 홍재형 · 박기춘 · 송민순 · 문학진 · 양승조 · 배영식 · 강기정 의원 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9. 9. 17 안상수·안효대·유성엽·이한성· 정영희·김정권·안홍준·조경태·정의화· 조원진·김성태·임동규·유정현·신지호· 이명수 의원 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2010. 12. 10 정장선·원혜영·조영택·김성곤· 장병완·전혜숙·주승용·전현희·우제창· 김재균·정병국 의원 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0. 10. 5 한선교·이명규·김영선·이인기· 최구식·김옥이·이경재·홍사덕·안형환· 이학재 의원 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1. 8. 17 한선교·강승규·이철우·진성호· 손범규·김태원·고흥길·허원제·김성동· 이경재·남경필 의원 발의)

(이상 6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보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1. 10. 21 황영철·정해걸·조진래·권영진· 박우순·임해규·이한성·박준선·김성수· 여상규·이영애 의원 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봉균 의원 대표발의)

(2011. 10. 21 강봉균·안규백·김효석·주승용· 최인기·김성순·김우남·이종걸·조영택· 전병헌·최규식·문학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12 신성범·유재중·권영진·권경석· 박민식·윤석용·최구식·이종혁·정해결· 원희목·조진래 의원 발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범구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9 정범구·이낙연·박은수·강기갑·이인기·박영선·조배숙·김유정·김재윤·김영록·김효석 의원 발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5 황영철·박준선·김성수·정해걸· 정양석·권영진·윤석용·윤영·이한성· 조진래 의원 발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 발의)

(2012. 1. 17 김영록·김재균·김춘진·박우순· 신건·안규백·유선호·유원일·전현희· 정범구·조경태·주승용 의원 발의)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안(윤영 의원 대표발의)
(2011. 5. 31 윤영·정해결·성윤환·김학용· 최연희·강석호·이낙연·유선호·김춘진· 류근찬·김낙성·송훈석·신성범·이윤석· 김성수·김효석·여상규·김재윤·김우남· 김영록·조진래·변웅전·황영철 의원 발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1. 8. 23 정부 제출)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식물신품종 보호법안

(이상 2건 2011. 12. 12 정부 제출) (이상 8건 수정하여 의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1 강창일·김재균·주승용·장세환· 백재현·김영진·조배숙·강기정·강성종· 조경태 의원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1. 9. 5 강석호·김학용·김영록·신성범·성윤환·정해결·황영철·이사철·이철우·김호연·주성영·김우남·나성린·홍일표·김소남·여상규·박보환·안효대·김성회·유재중·이병석·김성수·차명진·유일호·이화수·김금래·주호영 의원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아

(2011. 10. 25 정부 제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1. 10. 28 황영철·조진래·박준선·성윤환· 김선동·여상규·김성수·권영진·윤영· 최경희 의원 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

(2011. 9. 27 원혜영·안규백·김영진·조정식· 이미경·신낙균·조영택·송민순·이찬열· 문학진 의원 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11. 7. 8 김학용·김정권·김성수·강봉균· 정해걸·성윤환·신성범·강석호·김용태· 유기준·박준선·조전혁·원유철·강승규· 여상규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해걸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1 정해걸·조배숙·이철우·김세연· 김성수·유재중·신성범·김학용·정영희· 이화수·윤영·정희수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봉균 의원 대표발의)

(2011. 10. 21 강봉균·조배숙·김효석·주승용· 최인기·김성순·김우남·이종걸·전병헌· 최규식·문학진 의원 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6 강석호·김성수·정해결·신성범· 성윤환·황영철·이영애·이사철·이주영· 김학용·유기준·안효대·한기호 의원 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현기환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 현기환·정의화·권영진·유정복· 김태원·김무성·안형환·이화수·유재중· 강길부·김영선·서병수 의원 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9 강기갑·곽정숙·이정희·홍희덕·

권영길·김선동·김춘진·유성엽·조배숙· 최규성·조승수·유선호 의원 발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

(2010. 8. 13 송훈석·이종걸·홍영표·우제창· 이용경·김정·남경필·이사철·최연희· 박대해 의원 발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2011. 10. 24 정부 제출)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정범구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1 정범구·이윤석·홍영표·최규성· 이석현·양승조·박은수·이춘석·주승용· 전현희 의원 발의)

(이상 1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4건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보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결·이영애· 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 김정 의원 발의)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 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결·이영애· 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 김정 의원 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11. 10. 7 이명규·정태근·이진복·김태환· 김성조·김태원·김선동·이화수·배은희· 서상기 의원 발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2 노영민·박은수·박우순·김학재·
박지원·주승용·조경태·최종원·김진표·
정동영·강창일·김재윤·김우남·서종표·
장세환·오제세·신건·강봉균·박상천·
노영민 의원 발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 발의)

(2011. 5. 19 유기준·윤진식·유성엽·김효재· 현경병·박종근·이애주·강창일·김정권· 이종혁·신상진·이한성·한선교 의원 발의)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0. 26 정부 제출)

(이상 6건 수정하여 의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0. 1. 18 배은희·나성린·정태근·원유철·고승덕·정의화·최철국·임동규·이영애·현기환·김소남·성윤환·이두아·이인기·백성운·김기현·이정선 의원 발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30 정부 제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

(2011. 8. 19 김혜성·정장선·강길부·김세연· 송훈석·조배숙· 노철래·배은희·김정· 최규성 의원 발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11. 10. 27 박민식·권영진·김성태·김성회· 김세연·김재경·박진·윤석용·이상권· 이종혁·이화수·정태근 의원 발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근 의원 대표발의)

(2011. 12. 8 정태근·박민식·신성범·김성식·황영철·김성태·김세연·권영진·정두언· 남경필 의원 발의)

(이상 5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지식경제위원장 보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4 윤석용·권영진·유재중·유정복· 추미애·원희목·이춘식·이낙연·김정권· 최경희 의원 발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14 윤석용·이윤성·이한성·권영진· 양승조·손숙미·박은수·전현희·원희목· 유재중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30 정부 제출)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 발의)

(2010. 6. 24 김소남·홍정욱·안효대·이해봉· 김충환·권경석·이명수·원희룡·유정현· 황우여·손숙미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17 박순자·이애주·손숙미·김소남· 박민식·이인기·공성진·유재중·안홍준· 정해걸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현회 의원 대표발의)

(2011. 10. 24 전현희·박은수·박지원·주승용· 백원우·박기춘·양승조·이춘석·김효석· 송훈석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1. 11. 2 신상진·이한성·이춘식·손숙미· 이종혁·강명순·박상은·이명수·유재중· 김을동 의원 발의)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 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 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 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안(최연회 의원 대표발의)

(2011. 6. 30 최연희·박우순·한기호·최병국· 최경희·송훈석·신낙균·허천·최종원· 권성동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6. 1 오제세·임영호·김부겸·김영록· 백재현·정장선·안홍준·김재균·김성곤· 김금래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1. 6. 23 주승용·최영희·최인기·우윤근·백원우·최규성·조영택·양승조·박은수·김춘진·김성곤·김영진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 의원 대표발의)

(2011. 4. 22 원희목·최경희·손숙미·김금래· 공성진·허원제·윤석용·김춘진·김소남· 김용태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 의원 대표발의)

(2011. 5. 3 김금래·김세연·박대해·신성범· 안효대·윤석용·원희목·이춘석·전여옥· 정옥임·정해결·정희수·최경희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1. 7. 12 전현희·장세환·김영록·백원우· 최재성·김영진·박기춘·김희철·박지원· 이춘석·조영택·최영희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1. 10. 21 신상진·이한성·유재중·정해걸·유기준·최구식·이진복·김호연·원희목· 현기화 의원 발의)

(이상 1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5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 조해진·신영수·이미경·강성천· 이사철·김금래·홍영표·조원진·정진섭· 김영우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30 정부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7. 1 정부 제출)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 발의)

(2008. 11. 28 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 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 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 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6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 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 김낙성 의원 발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범관 의원 대표 발의)

(2011. 7. 26 이범관·윤석용·황진하·신성범· 손범규·박민식·김용구·김무성·권택기· 강성천·정영희·이진복·변웅전·홍희덕· 조해진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윤선 의원 대표 발의)

(2009. 6. 1 조윤선·유성엽·임동규·이성헌· 주호영·이인기·이한성·배은희·황우여· 안효대·조원진·신상진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30 정부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 밤의)

(2011. 3. 2 강성천·김옥이·박준선·손범규· 신영수·원희룡·이범관·이은재·이정선· 임동규·정미경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0. 11 정부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19 홍영표·이찬열·이미경·신낙균· 홍희덕·이낙연·정동영·정범구·김영진· 신학용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18 홍영표·이찬열·이미경·신낙균· 홍희덕·이낙연·정동영·정범구·김영진· 신학용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2011. 8. 2 강창일·유선호·유성엽·조영택·오제세·조배숙·김재균·조정식·박은수· 장세환 의원 발의)

(이상 10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3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9. 12. 15 강창일·양승조·주승용·김성순·김우남·조영택·정동영·유성엽·우윤근·이시종·이낙연·정장선·김춘진·허태열·강기정·김성곤 의원 발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11. 8. 12 안상수·김소남·김정권·이한성· 정영희·김성수·변재일·권경석·박희태· 김정훈·원희목·이인기 의원 발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 구식 의원 대표발의)

(2011. 9. 2 최구식·여상규·정해걸·백성운· 김재경·권영진·신성범·조진래·장광근· 신영수·정갑윤 의원 발의)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2011. 3월 29일 정부 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 5. 31 정부 제출)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1. 3 정부 제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6 정부 제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2009. 8. 5 장광근·김정권·이한성·최연희· 박민식·백성운·이인기·정수성·이해봉· 고승덕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09. 10. 16 권경석·조진형·김성조·원유철· 정갑윤·최인기·이은재·이명수·김태원· 최규식·신지호·장제원·유정현·김소남· 정수성·안경률·김충조·이범래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 (2010. 7. 22 최구식·김금래·진영·김효재· 조윤선·유성엽·홍일표·권경석·이성헌· 조진래·이경재·권영진·이해봉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 (2010. 11. 30 유선호·원혜영·조배숙·박영선· 이낙연·박은수·김성곤·김재균·강기갑· 조영택·전혜숙·김효석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11. 2. 8 박기춘·이찬열·박영선·신낙균· 김재윤·김성곤·김진표·박은수·강기갑· 최규성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10. 12. 31 최규성·조배숙·강창일·유선호· 노영민·김효석·김영진·조영택·최인기· 정세균·조경태·박기춘·김희철·김영록· 김우남·서종표·원혜영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1. 6. 13 김선동·윤석용·김성곤·성윤환· 이한성·유승민·유기준·조전혁·권영진· 여상규·김정훈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5. 25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 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 김낙성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 (2009. 4. 3 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 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 발의)

(2009. 8. 14 임두성·김무성·윤석용·이윤성· 정해걸·윤영·임동규·한선교·이성헌· 김옥이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 발의)

(2009. 5. 18 이정선·현경병·양승조·배은희·김장수·이애주·유기준·윤상현·안상수·이정현·박기춘·이성헌·강성천·신영수·진성호·유성엽·김성곤·정병국·진영·정미경·심재철·이두아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9. 2 정부 제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 (2010. 3. 22 윤영·김용구·안효대·유기준· 노철래·장광근·김무성·정희수·허천· 정갑윤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 발의)

(2011. 3. 16 김기현·손범규·강기갑·김정권· 이정선·강용석·한선교·안효대·김호연· 유기준·김태원·강길부·임해규·황우여· 김소남·이한성·홍정욱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6 장윤석·최규식·신영수·조배숙· 이한성·이정선·신상진·한선교·김기현· 김충환·김성곤·임영호·최경희·김무성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 발의)

(2010. 5. 14 김소남·이명수·이한성·이해봉· 김유정·이인기·김성태·김태원·김성수· 김낙성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11. 5. 2 최규성·김우남·오제세·강창일· 유선호·이찬열·강기정·백재현·김효석· 김재윤·강기갑·노영민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4. 20 정부 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5. 25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

(2010. 12. 17 홍재형·김춘진·조영택·김영록· 김재균·김우남·원혜영·변재일·김동철· 박주선·이종걸·양승조 의원 발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여옥 의원 대표발의)

(2011. 5. 3 전여옥·최구식·이인제·김성태·장제원·정진섭·장윤석·정양석·이사철·조해진·신영수·정몽준·강명순·신성범·이애주·장광근·강승규·고홍길·허천·이철우 의원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2. 31 정부 제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9 정부 제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 의원 대표발의) (2010. 10. 28 박상은·이재선·이춘식·신상진· 김성수·신성범·황영철·조윤선·이애주· 강명순·강길부 의원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현기환 의원 대표발의) (2011. 3. 2 현기환·권영진·김정권·서병수· 이진복·김용구·황영철·김세연·이한성· 유재중·김낙성·장제원·김호연 의원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1. 5. 11 김기현·이경재·이병석·이한성· 장윤석·박순자·유성엽·조원진·장광근· 이은재·김충환 의원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7. 18 정부 제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11. 8. 16 최규성·백재현·강기정·유선호· 노영민·이찬열·오제세·박기춘·김효석· 강기갑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6. 29 정부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5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 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 김낙성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3 안홍준·장윤석·김재윤·최경희· 이인기·김성태·원희목·유일호·유재중· 조승수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 발의)

(2011. 3. 23 안홍준·강기갑·이한성·김성태· 손범규·임동규·한선교·원희목·황우여· 유재중·손숙미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5. 25 정부 제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해결 의원 대표 발의)

(2011. 9. 5 정해걸·정희수·유기준·김우남· 윤영·조진래·한기호·이철우·최구식· 조배숙·김태원·이병석·이명수·유성엽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기갑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24 강기갑·곽정숙·이정희·홍희덕· 권영길·金先東·유원일·조배숙·최규성· 유성엽·조승수·김낙성 김춘진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08. 8. 1 김태원·김영선·김성곤·박기춘· 이한성·김성수·김종률·손범규·신상진· 안상수·구본철·김충조·이화수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

(2009. 2. 16 윤영·임두성·김성태·여상규· 김성조·이철우·정희수·권경석·강석호· 허범도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8 박기춘·백재현·조영택·유선호· 문학진·조정식·김성곤·전현희·최규성· 이찬열·박지원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2009. 4. 29 곽정숙·강기갑·이정희·홍희덕· 권영길·강창일·양승조·김춘진·박은수· 최문순·이성헌·유원일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09. 9. 15 안홍준·안상수·한선교·이한성· 황영철·권영진·이진복·최철국·현경병· 원유철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경 의원 대표발의)

(2009. 9. 4 이용경·박은수·김정권·유원일·김춘진·전혜숙·김창수·김영진·임영호· 문국현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9. 14 정부 제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1. 3. 28 장제원·윤석용·김세연·김정권· 조승수·박은수·이한성·황우여·윤영· 고승덕·김정훈·안효대·송훈석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1. 3. 9 김태원·김정권·손범규·강용석· 김호연·이한성·황우여·권경석·김소남· 김기현·이종혁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6. 17 정부 제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11. 4. 20 박기춘·유선호·이윤석·김성곤· 유성엽·최규성·이찬열·전현희·오제세· 박주선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호 의원 대표발의)

(2011. 9. 14 유선호·문학진·강기갑·김재균· 최규식·김학재·조영택·박영선·김춘진· 곽정숙·강창일·김영진 의원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6. 17 정부 제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2011. 4. 20 박기춘·유선호·이윤석·김진표· 김성곤·박은수·유성엽·최규성·이찬열· 박주선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대표발의)

(2010. 3. 16 전여옥·최구식·진수희·정진석· 정미경·정양석·진영·권택기·신낙균· 이정선·송광호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 박순자·강길부·박기춘·박민식· 백재현·유정현·이인기·이한성·이화수· 장광근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5. 25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 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 김낙성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11. 5. 3 강기정·강창일·김우남·이미경· 최규성·문학진·신건·양승조·백재현· 조영택·김상희·최영희·원혜영 의원 발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 발의)

(2010. 5. 10 이혜훈·박상은·정해걸·이영애· 박준선·홍준표·이한성·구상찬·김혜성· 김정 의원 발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3월 28일 정부 제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 발의)

(2011. 7. 13 최규성·노영민·김우남·백재현· 이찬열·장세환·유선호·박기춘·오제세· 강창일·강기정 의원 발의)

(이상 58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3건 국토해양위원장 보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2011. 4. 15 정부 제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및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 최경환·권영세·나성린·윤상현· 이한구·이정현·안홍준·권영진·허태열· 강길부·윤석용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 원장 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

(2008. 11. 5 강명순・김동성・손숙미・고승덕・ 유재중・최영희・정하균・이정현・송영길・ 이애주·황우여·유성엽·김성태·배영식· 정영희·오제세·김재윤·이학재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

(2009. 7. 31 임두성·임동규·유성엽·김무성· 손숙미·김성수·윤영·강명순·윤석용· 이성헌·한선교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09. 7. 17 유재중·김무성·강명순·손숙미· 원희목·현기환·김세연·유기준·최구식· 박민식·이종혁·성윤환·이정선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09. 8. 25 오제세·이경재·김정권·박영선· 김종률·이시종·양승조·변재일·김창수· 안민석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회 의원 대표발의)

(2009. 11. 27 전현희·백원우·양승조·최철국· 송영길·박민식·박지원·정범구·우윤근· 문학진·최규성·이춘석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회 의원 대표발의)

(2010. 1. 29 전현희·원희목·최철국·백원우· 박은수·김재윤·송영길·양승조·최인기· 최규성·김상희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2. 28 오제세·전병헌·김성곤·장병완· 유성엽·유선호·김용구·주승용·최재성· 이찬열·조영택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1. 6. 2 신상진·황우여·박순자·이경재· 손숙미·최경희·임동규·윤석용·윤진식· 권영세·임영호·이애주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0. 1. 26 임영호·김창수·김용구·김낙성· 이명수·권선택·이상민·류근찬·변웅전· 이재선 의원 발의)

(이상 9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보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
(2011. 5. 30 성윤환·윤영·김금래·손숙미· 강승규·이경재·최인기·한선교·이낙연· 안형환·박준선·김성동·진성호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 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 발의)

(2011. 12. 29 손숙미·이영애·장광근·김성조· 정해걸·조전혁·박순자·진수희·남경필· 김소남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9 손숙미·이영애·장광근·김성조· 정해걸·조전혁·박순자·진수희·남경필· 김소남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9 손숙미·이영애·장광근·김성조· 정해걸·조전혁·박순자·진수희·남경필· 김소남 의원 발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 발의)

(2011. 12. 29 손숙미·이영애·장광근·김성조· 정해걸·조전혁·박순자·진수희·남경필· 김소남 의원 발의)

이상 4건 2012년 2월 15일 발의자 철회 요구 국회의원(김창수) 사직의 건

(2012. 1. 25 김창수 의원 제출)

2월 15일 제출자 철회 요구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2. 2. 2 김영록·김춘진·유선호·박우순· 박은수·전현희·정범구·이용섭·金先東・ 신건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 발의)

(2012. 2. 2 김영록·김춘진·유선호·박우순· 박은수·전현희·정범구·이용섭·金先東· 신건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0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청소년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입법에 관한

청원

(2012. 2. 15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8 (상현동) 국회 아동·청소년 미래포럼 회원 박지홍 외 499인으로부터 이춘석·최영희 의 원의 소개로 제출)

2월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야생동물 포획 및 예산 확대 촉구에 관한 청원 (2012. 2. 17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번지 한농 연회관 2층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장 김준봉 외 5262인으로부터 김춘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추천의뢰서 제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2. 2. 24 대통령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문화재청 소관 협회 관리에 관한 질문서

(2012. 2. 8 심재철 의원 제출)

안철수씨 검찰 조사 관련 질문서

(2012. 2. 17 강용석 의원 제출)

(주) 안철수연구소 BW발행 관련 질문서

(2012. 2. 22 강용석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문화재청 소관 협회 관리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2. 2. 17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201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각각 제 출되었음

2012. 2. 28 국회사무처

2012. 2. 29 국회도서관

2012. 2. 29 국회예산정책처

2012. 2. 29 국회입법조사처

2012. 2. 29 대법원

2012. 2. 28 헌법재판소

2012. 2.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2. 28 방송통신위원회

2012. 2. 29 국가인권위원회

2012. 2. 28 대통령실

2012. 2. 28 국무총리실

2012. 2. 28 감사원

2012. 2. 28 기획재정부

- 2012. 2. 28 통일부
- 2012. 2. 28 외교통상부
- 2012. 2. 28 법무부
- 2012. 2. 28 국방부
- 2012. 2. 28 행정안전부
- 2012. 2. 28 교육과학기술부
- 2012. 2. 28 문화체육관광부
- 2012. 2. 28 농림수산식품부
- 2012. 2. 28 지식경제부
- 2012. 2. 28 보건복지부
- 2012. 2. 28 환경부
- 2012. 2. 28 고용노동부
- 2012. 2. 28 국토해양부
- 2012. 2. 28 여성가족부
- 2012. 2. 28 법제처
- 2012. 2. 28 국가보훈처
- 2012. 2. 2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12. 2. 28 공정거래위원회
- 2012. 2. 28 금융위원회
- 2012. 2. 28 국민권익위원회
 - 이상 32건 소관 위원회에 회부

(이상 32건 부록으로 보존함)

○제306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일 시	2012년 2월 15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주요법안 처리 등
요 구 자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외 173인

(2012. 2. 10)